

특정감사

감 사 보 고 서

- 공직비리 기동점검 I -

2017. 9.

감 사 원

목 차

I . 감사실시 개요.....	1
------------------	---

II .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2
---------------------------	---

(1) 보조금 부당 집행, 직무관련 금품수수 등[통보2·통보(비위)2]	3
(2) 국고보조사업을 특정업체에 재위탁하도록 부당 개입[징계]	34
(3) 보조사업과 무관한 도정 홍보사업을 위해 보조금을 부당 집행[주의·통보(인사자료)]	39
(4) 특별조정교부금 관련 사업 정산업무 처리 부적정[시정]	49
(5) 직원 채용업무 부당 개입[통보(인사자료)]	53
(6) 과장급 보직인사 및 진안군의료원 직원 채용업무 부당 처리[징계·주의2]	62
(7) 용역계약 준공 및 감사업무 부당 처리[문책2·주의·통보]	71
(8) 배수개선사업 소요자재 검수업무 부당 처리[문책]	85
(9) 용역계약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업무 등 부당 처리[징계·주의]	91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감사원은 기관 내부통제가 어려운 고위공직자와 기관의 구조적 비리에 대한 강도 높은 감찰활동으로 “깨끗하고 신뢰받는 정부 구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7년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이번 감사를 하였다.

2. 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는 민생 관련 보조금 집행, 직원 채용·인사, 계약 등에서의 권한 남용, 직무관련 금품수수, 이권 개입 등 고질적 부패 척결에 중점을 두고, 비리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바탕으로 경기도, 한국가스안전공사, 진안군, 코레일네트웍스주식회사 등을 대상으로 감사하였다.

3. 감사실시 과정

이번 감사는 감사원이 수집한 공직비리 관련 정보를 기초로 20명의 감사인력을 투입하여 2017. 3. 2.부터 같은 해 5. 2.까지 비리 개연성이 높은 사항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4. 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과 관련하여 관련기관으로부터 주요 지적사항의 업무처리 경위·향후 처리대책 등에 관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후 감사원은 감사대상 기관의 의견 등을 포함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2017. 9. 7.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Ⅱ.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감 사 원

통보·통보(비위)

제 목 보조금 부당 집행, 직무관련 금품수수 등

소 관 기 관 ① 경기도 ② 한국산업인력공단

조 치 기 관 ① 경기도 ② 한국산업인력공단 ③ 재단법인 경기도일자리재단

내 용

1. 사건 개요

경기도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ㄱ사업” 등 43개 보조사업의 사업자로 사단법인 ●●¹⁾(이하 “●●”이라 한다)를 선정 한 후 보조금 계 15,781백만 원(국고보조금 3,784백만 원, 지방보조금 11,997백만 원)을,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ㄴ사업” 등 2개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을 선정 한 후 국고보조금 계 1,230백만 원을 각각 교부하여 보조사업을 수행하게 하고 이를 감독하였다.²⁾([별표 1] “●● 보조사업 수행 현황(2013~2016년)” 참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제1항,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법령과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 장의 처분에

1) ●●은 2016. 11. 24. 사원총회의 결의로 해산되었으며 같은 날 A를 청산인으로 선임하여 2017. 6. 12. 현재까지 청산 절차를 진행 중임

2) 경기도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교부한 국고보조금은 각각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을 ●●에 다시 교부한 간접보조금임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제30조 및 「지방재정법」 제32조의6과 제32조의8,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5조와 제30조 등에 따르면 보조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교부결정의 내용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기도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보조사업자인 ●●이 보조금을 지원 목적에 맞게 제대로 사용하는지 철저히 감독하는 한편, ●●이 제출한 사업실적보고서를 철저히 검토하여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보조금을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했다.

그런데 이번 감사원 감사(2017. 3. 9.~5. 2.)결과 ●●은 경기도로부터 “ㄱ사업” 등 23개 사업³⁾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보조금 중 656,238,544원⁴⁾과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ㄴ사업” 및 “ㄷ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보조금 중 192,725,000원⁵⁾ 계 848,963,544원을 빼돌려 불법 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지원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였고, 경기도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의 보조금 집행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

3) [별표 1] “●●보조사업 수행 현황(2013~2016년)”의 ‘연번 1~23’ 사업

4) 계약대금 145,650,295원([별표 2]의 ‘합계-경기도-횡령금액’ 참조), 강사비 405,459,980원([별표 3]의 ‘합계-경기도-횡령금액’ 참조), 인건비 105,128,269원([별표 4]의 ‘합계-횡령금액’ 참조)을 빼돌린 금액의 합계임

5) 계약대금 163,452,500원([별표 2]의 ‘합계-한국산업인력공단-횡령금액’ 참조), 강사비 29,272,500원([별표 3]의 ‘합계-한국산업인력공단-횡령금액’ 참조)을 빼돌린 금액의 합계임

한 채 ●●이 보고한 사업실적보고서대로 정산처리를 하였으며, 특히 ●●에 대한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경기도의 담당 공무원은 ●● 관계자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 관계자들의 위법한 보조금 집행

재단법인 경기도일자리재단(이하 “(재)경기도일자리재단”이라 한다) ○팀 과장 B은 2013. 4. 1.부터 2016. 12. 31.까지 ●● □부 □팀 팀장 또는 □본부 ○ 부장의 직위에서⁶⁾ (재)경기도일자리재단 △팀 팀장 A는 2011. 10. 10.부터 2016. 12. 31.까지 ●● □부 부장 또는 □본부 본부장의 직위에서⁷⁾ 각각 ●●의 보조금 집행 업무를 담당하거나 총괄하였다.

가. A의 경우

(1) 계약금액을 부풀려 지급한 후 별도 법인 계좌 등으로 빼돌려 불법자금 조성

A는 ●● □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2년 말경(날짜 모름) 당시 ●● D장이던 C⁸⁾와 상의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기로 한 후 2013. 4. 10. C가 지인의 명의를 빌려 주식회사 ▷▷을 설립하자 □팀장 B 등 ●●의 보조사업 전담 직원들에게 “계약업체에 견적가보다 대가를 많이 주고 견적가와 차액을 ▷▷을 통해 돌려받으라”고 지시하였다.

6) B은 2013. 4. 1.부터 2016년 4월(날짜 모름)까지 □부 □팀 팀장, 이후 2016. 12. 31.까지 □본부 ○부 부장의 직에서 각각 근무함

7) A는 2011. 10. 10.부터 2013. 9. 23.까지 □부 부장, 2013. 9. 24.부터 2016. 12. 31.까지 □본부 본부장의 직위에서 각각 근무함

8) C는 경기도 ◎장 또는 P(2006년 5월~2012년 7월)으로 근무하다가 2012. 9. 5.부터 2014. 12. 12.까지 ●● D장으로 근무하였으며 D장직에서 퇴직한 후 2016. 8. 13. ▷▷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같은 날 회사명을 주식회사 ▽▽으로 변경한 후 2017. 6. 12. 현재까지 ▽▽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음

이에 따라 A의 지시를 받은 B 등은 2013년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대표자 D) 등 6개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과 계약을 체결한 5개 계약업체 직원들과 구매할 물품의 견적가보다 큰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해당금액을 지급한 후 견적가와 차액을 ▷▷ 명의의 계좌 등으로 되돌려 받기로 하고 나서, 계약금액을 부풀려 허위로 계약한 다음 이를 근거로 계약대금 계 479,244,387원을 지급한 뒤 견적가와 차액 계 62,651,695원을 D 명의의 계좌로 돌려받는 한편, B는 A의 승인 하에 계 37,358,600원을 자신의 지인 E 명의의 예금계좌로 돌려받았다.([별표 2] “계약대금 허위·과다 지급 명세”의 ‘연번 1~7’ 참조)

또한 A는 2016년(날짜 모름) ●●의 보조사업 전담자 F⁹⁾으로 하여금 자신의 배우자(G)의 지인이 운영하는 ◇◇(대표자 H)에 네일아트 교육 재료비 48,000,000원을 지급하도록 지시한 후 위 업체 대표로부터 자신의 배우자 G 명의의 예금계좌로 19,640,000원을 돌려받기도 하였다.([별표 2] “계약대금 허위·과다 지급 명세”의 ‘연번 8’ 참조)

(2) 보조사업비로 자산 임차를 가장하여 별도 법인의 자산 취득대금으로 사용

●●은 2013. 2. 25.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자동화제어장비(Programmable Logic Controller¹⁰⁾, 이하 “PLC”라 한다)를 임차하여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PLC 교육 강좌를 운영하는 내용의 “ㄴ 운영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결과 “ㄴ”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9) F는 ◇◇의 네일아트 교육 재료의 납품가격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A가 지정해 준 금액을 ◇◇에 지급하였고 이후 ◇◇ 대표자 H로부터 견적서를 받았다고 진술함

10) 공장 자동화를 구현하는 장비의 일종으로 CPU 모듈 등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결합된 장비임

●●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맺은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표준약정서」(2013. 3. 8.)와 약정서의 붙임 「청년 취업아카데미 표준 운영약정조건」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은 정부지원금 830,500,000원¹¹⁾과 ●● 자체부담금 225,600,000원으로 PLC 교육과정을 운영하되, 정부지원금을 자산 취득 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당시 위 보조사업 담당자였던 A는 2013년 초(날짜 모름) 위 약정조건을 잘 알면서도 자신이 알고 지내던 전산장비 제작 업체인 ♡♡ 대표 I와 PLC 장비 18대를 구입하기로 구두 합의한 후 당시 D장 C로부터 구입 승인을 받았다.

그리고 A는 2013년 5월과 같은 해 6월 2차례에 걸쳐 I로부터 PLC 장비 매매가액 계 190,700,000원이 기재된 견적서를 제출받은 후 I에게 “대금은 몇 차례에 걸쳐 나누어서 줄 테니까 구매 계약을 임차 계약인 것처럼 만들자”고 한 후, 2013. 6. 19. ●●이 ♡♡로부터 PLC 장비를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 임대계약서를 작성하여 I에게 서명하도록 하고 2013년 6월 말경 PLC 장비 18대를 납품받아 D의 소유로 관리하게 하였다.¹²⁾

그 후 A는 당시 D장 C 등으로부터 장비 임차료 지급 결재를 받아 PLC 장비 매매가(190,700,000원) 중 117,452,500원¹³⁾을 보조금으로 지급하였다.¹⁴⁾ ([별표 2] “계

11)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구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 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14호) 제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리사업”을 운영하면서 고용노동부로부터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다시 ●●에 정부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며, 약정상 정부지원금은 830백만 원이나 교육과정 축소 운영 등의 사유로 실제 교부된 금액은 486백만 원임

12) 2013년 8월경 PLC 교육과정이 종료된 후 교육과정에 사용한 PLC 장비 18대를 ●●에서 보관하다가 2014년(날짜 모름)에 D으로 옮겼고, 이후 2017. 6. 12. 현재까지 PLC 장비는 C가 대표이사로 있는 ▽▽에서 관리하고 있음

13) 2013. 6. 25.과 2013. 9. 3. 두 차례에 걸쳐 ♡♡에 지급한 보조금은 총 179,952,500원이고, 그중 PLC 장비 구입대금 117,452,500원을 제외한 나머지 62,500,000원은 PLC 교육 강사비 등 명목임

14) 잔금 73,247,500원은 D 계좌에 모아두었던 자금 등으로 지급함

약대금 허위·과다 지급 명세”의 ‘연번 9’ 참조)

그뿐만 아니라 A는 2014년과 2015년에 “르사업” 등 2개 보조사업에서 각각 PLC 교육과정을 또다시 운영하면서 ●●이 취득한 PLC 장비를 D으로부터 임차하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장비임차료 명목으로 D에 보조금 계 72,000,000원을 지급하였다.([별표 2] “계약대금 허위·과다 지급 명세”의 ‘연번 10~11’ 참조)

(3) 강사비를 과다 지급한 후 차액을 돌려받거나 허위로 지급하여 불법자금 조성

(가) 강사비를 과다 지급한 후 과다 지급된 금액을 빼돌려 불법자금 조성

●●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강좌 등을 운영하는 데 시간당 7만 원에서 12만 원¹⁵⁾의 강사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보조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 등으로부터 해당 보조금을 수령하였다.

그런데 A는 2014년(날짜 모름) □팀장 B에게 강사비를 돌려받을 만한 강사를 찾아보라고 지시하였고, B가 J(B의 지인)와 강사비의 일부를 돌려받기로 상의한 후 J 및 J가 추천하는 강사를 보조사업 관련 강좌의 강사로 활용하고 강사비를 E(B의 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돌려받겠다고 A에게 보고하자 이에 동의해 주었다.

이에 따라 B는 2014년 9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별표 3] “외부 강사비 허위·과다 지급 명세”(‘연번 1~11’ 참조)와 같이 J 및 J가 추천하는 강사 등(총 23명¹⁶⁾)에게 강사비 계 149,311,340원을 지급한 후 위 강사들로부터 돌려받기로 미리 협의된 강사비 계 91,614,332원을 E 명의의 예금계좌로 돌려받았다.

또한 A는 2015년(날짜 모름) K와 상의하여 K¹⁷⁾의 지인 L¹⁸⁾으로부터 강사비를

15) 전임강사는 시간당 12만 원 또는 10만 원, 보조강사는 시간당 7만 원 내외

16) J 및 J가 추천한 강사는 총 14명이고, 나머지 9명은 B 등이 따로 섭외한 강사들임

돌려받기로 한 후 □본부 직원 M 등 보조사업 전담자들에게 L과 L이 추천하는 사람들을 강사로 활용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부 직원 N에게는 L에게 연락하여 N 명의 예금계좌 등을 통해 강사비를 돌려받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M 등 보조사업 전담자들은 [별표 3] “외부 강사비 허위·과다 지급 명세”(‘연번 12’ 참조)와 같이 2015. 9. 23.부터 2016. 12. 22.까지 “□사업” 등 8개 보조사업에서 L 및 L이 추천한 강사(총 11명)에게 강사비 계 139,958,400원을 지급하였고, N는 L으로부터 돌려받기로 미리 협의된 강사비 계 71,513,360원¹⁹⁾을 N 명의 예금계좌(11,697,280원)나 A 명의의 예금계좌(59,816,080원)로 돌려받았다.

또한 A는 2014년 3월 ●●이 보조사업비²⁰⁾로 네일아트 강좌를 운영하게 되자 평소 네일아트 강사들과 인맥이 있는 자신의 배우자 G에게 “네일아트 강사비를 좀 회수해야 된다”라며 강사비를 되돌려 받을 강사를 알아보라고 하였고, G는 자신이 잘 아는 H 등 네일아트 강사 3명과 일정 금액의 강사비를 돌려 받기로 한 후 A에게 강사 명단(3명)을 건네주었다.

이후 A는 보조사업 전담자 M에게 배우자 G로부터 받은 강사 명단(3명)을 주며 이들을 강사로 활용하라고 지시한 다음, M가 위 3명의 강사에게 강사비 계 900,000원²¹⁾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출 기안을 해 오자 그대로 결재한 후 G로 하여

17) K은 ○의원(2010. 7. 1.~2014. 6. 30.)으로 활동하다가 2014. 12. 15.부터 2015. 11. 2.까지 ●●Ⅱ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15. 11. 11. ●●임시총회 의결로 ●●법정 청산인으로 선임되어 2016. 6. 30.까지는 ●●청산 업무를 총괄하였고 이 후 2016. 8. 1.부터 2017. 5. 12.까지 (재)경기도일자리재단 상임감사로 근무하였음

18) L은 전○의원(2010. 7. 1.~2014. 6. 30.)으로 K과는 이전부터 알던 사이임

19) L은 O 등 강사 10명으로부터 강사비를 돌려받은 후 자신이 받은 강사비를 합하여 계 71,513,360 원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N가 지정해 준 계좌로 송금하였음

20) “□사업”(국비 221,985,000원)

21) 세금을 공제하고 강사 3명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은 계 860,400원임

금 사전 협의된 금액인 600,000원을 돌려받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A는 [별표 3] “외부 강사비 허위·과다 지급 명세”(‘연번 13~20’ 참조)와 같이 2014. 12. 8.부터 2016. 12. 20.까지 “B사업” 등 8개 보조사업의 사업비 가운데 네일아트 강좌 강사비 계 262,634,080원을 자신의 배우자 G의 지인 9명에게 지급한 후 이들로부터 계 194,742,388원을 배우자 G 명의의 예금계좌로 돌려받았다.

(나) 강사를 허위 등록하고 지급한 강사비를 빼돌려 불법자금 조성

A는 2015년(날짜 모름) N에게 강사로 허위 등록할 사람을 알아보라고 지시하였고, N가 ●●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P와 상의하여 P 자신과 P의 남편 Q을 강사로 허위 등록하기로 하였다고 보고하자, N에게 이들을 “C사업” 등 3개 사업의 강사로 허위 등록하여 강사비를 지급한 후 되돌려 받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N는 [별표 3] “외부 강사비 허위·과다 지급 명세”(‘연번 21, 22’ 참조)와 같이 2015. 9. 25.부터 2016. 10. 20.까지 P와 P의 남편 Q을 “C사업” 등 3개 사업에 참여하는 강사로 허위 등재하여 이들에게 강사비 계 35,180,8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빼돌린 후 그중 계 31,600,000원을 N 명의의 계좌로 돌려받았다.²²⁾

또한 A는 2015년 10월경 평소 알고 지내던 강사 R에게 ●●을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며 계좌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 후, R로부터 R 명의로 개설된 예금 통장을 전달받았다.

그리고 나서 A는 □팀장 B에게 “D사업” 등 5개 사업의 참여 강사로 R를 허위로

22) P와 Q은 허위로 수령한 강사비 35,180,800원 중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소득세 등(3,580,800원)을 제외하고 31,600,000원만 N 명의의 계좌로 돌려줌

등록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B은 [별표 3] “외부 강사비 허위·과다 지급 명세”(‘연번 23’ 참조)와 같이 2015. 11. 12.부터 2016. 10. 20.까지 R를 “□사업” 등 5개 사업에 참여하는 강사로 허위 등재하여 R 명의의 계좌로 강사비 계 41,681,600원을 지급하였고, A는 이를 자신과 배우자 G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돌려받았다.²³⁾

(4) 보조사업 전담자 인건비를 허위·과다 지급한 후 빼돌려 불법자금 조성

A는 2015년 11월(날짜 모름) 당시 ●● 청산업무를 총괄하던 K과 무직 상태인 K의 남편을 사업전담자로 등록하여 인건비를 지급하기로 한 후 □팀장 B에게 K의 남편 S를 사업전담자로 허위 등록하라고 지시하였으며, ■부 직원 N에게는 자신의 배우자 G가 잘 아는 T를 사업전담자로 허위 등록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B과 N는 [별표 4] “사업전담자 인건비 허위·과다 지급 명세”(‘연번 1~3’ 참조)와 같이 S와 T를 “2015년 중소기업 □사업” 등 3개 사업전담자로 허위 등록하여 이들에게 인건비 계 13,358,970원을 지급하였고, A는 T에게 지급한 인건비 4,530,190원을 자신의 배우자 G 명의의 예금계좌로 돌려받았다.²⁴⁾

또한 A는 2015년(날짜 모름) □본부와 ■부 소속 직원들을 불러모은 자리에서 사업전담자 급여에 일정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할 것이니 추후 되돌려줄 것을 요구하였고, N에게는 사업전담자별 급여에 일정금액(4대 보험료 회사부담분²⁵⁾ 등)을 가산하여 인건비를 지급한 후 이를 다시 사업전담자들로부터 회수하라고 지시하였다.

23) R 명의의 계좌에서 A와 G 명의의 계좌로 각각 18,800,000원, 19,261,400원을 이체하고 나머지 R 명의 계좌에 남아 있는 3,620,200원은 A가 ●● 직원 F 명의의 계좌로 이체했다가 F로부터 다시 현금으로 받음

24) S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 허위 인건비 8,828,780원은 A가 따로 돌려받지 아니하고 K이 사용하도록 함

25) 회사 경비로 따로 납부해야 하는 직원의 4대 보험료를 의미함

그리하여 N는 [별표 4] “사업전담자 인건비 허위·과다 지급 명세”(‘연번 4~17’ 참조)와 같이 2016년 2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사업” 등 13개 보조사업비에서 B 등 사업전담자 13명에게 인건비 계 91,769,299원을 과다하게 지급한 후 이들에게 각각 카카오톡 메시지로 회수 계좌정보와 회수 금액을 알려주어 N 명의의 예금계좌로 87,569,299원, A 명의의 예금계좌로 4,200,000원, 계 91,769,299원을 다시 돌려받았다.

“가항-(1)”에서 “가항-(4)”까지의 내용과 같이 A는 C, K, B 등과 함께 ●●이 집행하는 보조사업비 중 계약대금(계 309,102,795원²⁶⁾), 외부강사비(계 434,732,480원²⁷⁾), 사업전담자 인건비(계 105,128,269원²⁸⁾) 등 계 848,963,544원([별표 5] “●●의 보조사업비 부당사용 명세” 참조)을 빼돌리고 그중 727,930,244원²⁹⁾을 자신과 배우자 G, N, E 등의 예금계좌를 통해 돌려받은 후 보조금 지원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³⁰⁾

첫째, A는 D 명의의 체크카드를 만들어 ●● D장이던 C와 K에게 주어 사용하도록 하고 이들이 사용한 체크카드 대금으로 27,134,513원(C 24,854,880원, K 2,279,633원)을 사용하였으며, A 자신 명의로 체크카드를 만들어 K에게 주어 사용

26) [별표 2] “계약대금 허위·과다 지급 명세”의 ‘합계’ 참조

27) [별표 3] “외부 강사비 허위·과다 지급 명세”의 ‘합계’ 참조

28) [별표 4] “사업전담자 인건비 허위·과다 지급 명세”의 ‘합계’ 참조

29) 계좌별로 돌려받은 금액을 종합해 보면 A 명의 계좌 82,816,080원, N 명의 계좌 130,866,579원, G 명의 계좌 238,173,978원, E 명의 계좌 128,972,932원, D 명의 계좌 134,651,695원, R 명의 계좌 3,620,200원(“각주 23번” 참조), S 명의 계좌 8,828,780원(“각주 24번” 참조)임(계좌별 구체적인 회수내역은 [별표 2]부터 [별표 4] 참조)

30) 보조사업비를 빼돌린 금액 계 848,963,544원과 계좌로 돌려받은 금액 계 727,930,244원의 차액 121,033,300원은 “가항-(2)”와 같이 ♡♡에 지급한 PLC 장비 18대 구매대금(117,452,500원)과 “가항-(3)-(나)”와 같이 P와 Q에게 강사비를 허위로 지급하고 돌려받지 않은 금액(3,580,800원, “각주 22번”참조)의 합계이며 PLC 장비 18대는 2017. 6. 12. 현재 C가 대표이사로서 있는 ▽▽[구 D]의 소유로 관리되고 있음

하도록 한 후 K이 개인 용도로 사용한 체크카드 대금 14,042,497원을 결제하는 데 사용하였다.

둘째, A는 2016년 3월경 K이 “비례대표 준비에 돈이 좀 필요한데 마련해 줄 수 있겠냐”라며 돈을 요구하자 2016. 5. 31. 자신의 배우자 G 명의의 예금계좌로 빼돌린 자금 20,000,000원을 수표(10,000,000원권 2매)로 K에게 전달하는 등 2015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매월 K에게 적게는 4,000,000원에서 많게는 21,500,000원까지 계 211,450,000원³¹⁾을 전달하는 한편, K의 배우자 S 명의로 지급하였던 인건비 8,828,780원은 K이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K이 계 220,278,780원을 자신의 선거자금(제20대 총선),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였다.³²⁾

셋째, A는 자신 또는 N·G·E 등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해 돌려받은 자금 중 186,450,180원을 배우자 G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였고, 11,993,500원은 자신이 사용한 체크카드 결제대금으로 사용하였다.³³⁾

나. B의 경우

B은 “가항-(3)-(가)”의 내용과 같이 2014년(날짜 모름) A로부터 강사비를 돌려줄 만한 강사를 찾아보라고 지시받은 후 자신의 지인 J에게 연락하여 “내부적으

31) 현금 181,450,000원, 수표 20,000,000원(2016. 5. 31.), K 명의의 계좌 입금액 10,000,000원(2016. 3. 23.)의 합계임

32) K은 2016년 1월부터 7월까지 매월 5백만 원에서 10백만 원 정도의 현금을 A가 자발적으로 주어 쓰긴 하였지만 그 외 자신이 요구하여 따로 받은 것은 2016년 5월 2천만 원 한 번뿐이라고 주장하나 ① 현금 수수와 관련하여 A는 N 명의 계좌 등의 현금 인출 내역을 제시하며 K의 요구로 매월 2천만 원 상당의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특히 2016. 12. 2. 마지막으로 커피숍에서 2천만 원을 전달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반면, ② K은 2017. 5. 15. 감사원의 문답조사 시에는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 매월 5백만 원 정도를 받았다고 그 기간 전후에 현금을 수수한 사실을 부인하다가 2017. 5. 19. 감사원의 문답조사 시에는 2015년 11월과 12월에는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고 2016년 1월부터 7월까지 매월 5백만 원에서 1천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음

33) 돌려받은 727,930,244원 중 “첫째~셋째”와 같이 사용한 459,899,470원을 제외한 268,030,774원은 B이 개인적으로 사용(45,700,000원)하거나 A가 D과 ●● 운영비로 또는 용도 불명하게 사용하였음

로 너에게 지급할 강사비는 6만 원으로 정해졌는데 예산 편성된 금액이 10만 원이니 4만 원은 돌려 달라. 데리고 오는 강사들에게도 대신 말해 달라”고 요구하여 동의를 받는 한편, 2014년 12월경 자신의 지인 E을 찾아가 “돈이 얼마 정도 들어오면 넘겨주면 된다. 괜찮겠냐?”라고 말하며 E으로부터 E 명의 예금계좌로 자금 거래를 하는 데 동의를 얻었다.

그리고 B은 A에게 J와 J가 추천하는 강사를 보조사업 강사로 활용하고 E 명의의 계좌로 강사비 등을 돌려받겠다고 보고하여 허락을 받은 후, [별표 3] “외부 강사비 허위·과다 지급 명세”(‘연번 1~11’ 참조)와 같이 J와 J가 추천하는 강사 등(총 23명)에게 강사비 계 149,311,340원을 지급한 후 위 강사들로부터 돌려받기로 미리 협의된 강사비 계 91,614,332원을 E 명의의 예금계좌로 돌려받았다.

B은 “가항-(1)”의 내용과 같이 2014년 A로부터 계약업체에 건적가보다 많은 금액에 계약하여 대가를 지급한 후 차액을 돌려받으라고 지시받은 후, 실습용 소프트웨어 임차계약 업체인 ♡♡ 주식회사의 직원 ED에게 임차료로 지급한 54,000,000원 중 4,000,000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여 같은 금액을 D 계좌로 돌려받았고, 2015년과 2016년 버스 임차계약 업체인 주식회사 ♣♣ 직원 U에게 ●●●으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액 329,344,387원(3개 사업, 3건) 중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여 2015. 8. 11. 부터 같은 해 12. 21. 사이에 총 4차례에 걸쳐 D 계좌로 27,351,695원을, 2016. 12. 27. E 명의 예금계좌로 37,358,600원을 돌려받았다.([별표 2] “계약대금 허위·과다 지급 명세”(‘연번 2, 5, 6, 7’ 참조)

또한 B은 “가항-(3)-(나)”의 내용과 같이 A로부터 “□ 사업” 등 5개 사업의 참

여강사로 R를 허위 등록하라고 지시받은 후 [별표 3] “외부 강사비 허위·과다 지급 명세”(‘연번 23’ 참조)와 같이 2015. 11. 12.부터 2016. 10. 20.까지 R를 “○사업” 등 5개 사업에 참여하는 강사로 허위로 등재한 다음 R 명의의 예금계좌로 강사비 계 41,681,600을 지급함으로써 A가 A의 배우자 G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해당 금액을 돌려받도록 하였다.

그리고 B은 “가항-(4)”의 내용과 같이 A로부터 K의 남편 S를 “○사업” 등 2개 사업전담자로 허위 등록하라고 지시받은 후 [별표 4] “사업전담자 인건비 허위·과다 지급 명세”(‘연번 1, 2’ 참조)와 같이 S를 “○사업” 등 2개 사업전담자로 허위 등록하여 S 명의의 예금계좌로 인건비 계 8,828,780원을 지급함으로써 K이 이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한편 B은 자신의 지인 E 명의의 계좌로 돌려받았던 자금(128,972,932원)은 자신의 전 세대출 상환 등 개인용으로 사용(45,700,000원)하거나 A에게 전달하였다.

3. 경기도 관계자의 금품수수 및 이권개입

재단법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본부 본부장 V³⁴⁾은 2014. 10. 2.부터 2016. 7. 26.까지 경기도 ▲실 ≡센 센터장의 직위에서 일자리 창출 관련 보조사업을 총괄하면서 ●●을 2016년 “ㄱ사업” 등의 보조사업자 또는 민간수탁사업자로 선정하고 ●●의 사업수행에 관하여 지도·감독하였다.

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V은 2016. 1. 18. 2016년 ㄱ사업의 추진계획을 수립하면서 ●●을 ㄱ사업의 민

34) V은 2017. 1. 1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함

간수탁사업자로 선정하기 위하여 해당 계획을 ●●과 미리 협의하였다.

그리고 경기도는 위 사업을 포함한 6개 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해 2016년 2월경 사업자 모집 공고를 거쳐 같은 해 2. 23. V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경기도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³⁵⁾를 개최하여 6개 사업 중 4개 사업³⁶⁾의 보조사업자로 ●●을 선정하였다.³⁷⁾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2015. 10. 30. 경기도 규칙 제3685호) 제15조와 제18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금전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V은 2016년 3월경 경기도 화성시 동탄2지구 소재 공무원임대아파트로 이사할 무렵 당시 ●● □본부장 A³⁸⁾에게 흡침대와 청소기를 사달라고 요구한 후³⁹⁾ A가 2016. 3. 26. 1,750,000원 상당의 흡침대와 524,000원 상당의 청소기를 구입하여 V의 집으로 배달시킨 것을 수령하는 등 [표 1]과 같이 금품을 요구하여 이를 제공받았다.^{40) 41)}

35) 보조사업자 및 민간수탁사업자 선정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각각 경기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와 경기도사무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

36) ㄱ사업, ㄴ사업, ㄷ사업, ㄹ사업

37) 위원회의 당연위원인 정책기획관, 일자리정책관 등은 참여하지 않고 V이 위원회 위원을 최종적으로 선정하고 V이 위원회 심의에 참여하는 등 실제 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판단됨

38) 당시 경기도능센터 ☆팀장 W은 ●● 직원들이 매일 아침 09:00경 출근을 하면 수원시 소재 ㄴ1층(●●은 같은 건물 9층에 소재)에 있는 V 사무실에 찾아와 인사하면서 업무에 관한 대화를 나누는 등 가깝게 지냈다고 진술함

39) A는 V이 집들이 선물로 흡침대와 다이슨청소기를 요구하여 이를 구입하여 제공하였고, 또한 V이 “이사 중에 TV가 깨졌다”, “흡침대와 쓰고 있는 이불이 맞지 않는다”면서 TV와 이불을 요구하여 이를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V은 A에게 이사간 집 공기가 좋지 않아 힘들다고 하자 A가 공기청정기를 제공했다고 진술함

40) V은 2016. 8. 12. 경기도 화성시 소재의 단독주택을 구입하여 이사하면서 같은 해 8월 중순경 ●● 직원과 집들이 중 이사 과정에서 파라솔이 없어졌고, 아궁이에 불을 지필 장작도 없다는 취지로 말하자 ●● 직원이 파라솔과 장작을 구입하여 제공했다고 진술함

41) V은 2016. 7. 27. 경기도 ■국 □장으로 보직변경 후 파라솔과 장작을 수령함

[표 1] V이 수령한 금품 명세

(금액단위: 원)

연번	제공자	구입시기	품목	물품금액
1	●● A	2016. 3. 26.	흙침대	1,750,000
2	●● A	2016. 3. 26.	청소기	524,000
3	●● A	2016. 4. 5.	LCD TV	539,000
4	●● A	2016. 4. 10.	공기청정기	195,000
5	●● A	2016. 4. 27.	이불	500,000
6	●● A	2016. 8. 26.	파라솔	384,000
7	●● A	2016. 9월경	장작	300,000
계				4,192,000

자료: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그리고 A는 2015년 9월 초순경 V에게 ●● 회장 X(■ ■ 출신)이 ●● 행사에 휴대폰 10대를 기증하기로 하였는데 1대가 남으니 휴대폰을 교환해주겠다고 하였고⁴²⁾ 이후 ●● 직원 B에게 V의 휴대폰을 교환해주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B이 2015. 10. 8. 수원시에 소재하는 휴대폰대리점인 “휴대폰 백화점”에서 659,900원 상당의 휴대폰(갤럭시S6)을 구입하여 V의 사무실에 찾아가 휴대폰을 제공하자 V은 이를 거절하지 않고 수령하였다.

또한 A는 2016년 7월 초순경 ㄴ 주차장에서 V과 우연히 만나 이야기를 하면서 V의 승용차(체어맨) 타이어 상태를 보고는 바꿔주겠다고 하자 V은 자신의 차종에 맞는 타이어를 골라 A에게 알려주었다.

이후 A는 ●● 부하직원 N를 통해⁴³⁾ 2016. 8. 4. 타이어 판매업체인 ‘ㄱ ㄱ’에서 타이어 4개를 523,800원에 구매한 다음 V에게 며칠 뒤 배정된 카센터를 알려주었

42) 실제 ●● 회장 X이 ●● 행사에 휴대폰 10대를 기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고, V은 최근 감사가 진행되면서 기증된 휴대폰이 아닌 ●●의 A가 따로 구입하여 제공한 휴대폰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함

43) N는 직접 자신의 계좌에서 2016. 8. 4. ‘ㄱ ㄱ’에 523,800원을 계좌이체하여 타이어 4개를 구매함

고, V은 2016년 8월 중순경 수원시 소재 카센터(상호 모름)를 방문하여 자신의 승용차 타이어 4개(523,800원 상당)를 모두 교환받았다.⁴⁴⁾

그리고 V은 2016. 8. 12. 경기도 화성시 소재의 단독주택을 구매하여 이사하기로 계획하면서 같은 해 7월 하순경⁴⁵⁾ 당시 같은 건물(경기도 수원시 소재 경기능센터)에 근무하고 있던 A를 카카오톡으로 연락하고 불러내어 “집 사고 리모델링했는데 여기저기 돈을 빌리고도 돈이 모자라니 5백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였고 A가 2, 3일 뒤에 5만 원권 100장을 현금으로 전달하자 이를 수령⁴⁶⁾하였다.⁴⁷⁾

나. 위법한 보조사업 재위탁 지시

V은 “2016년 2사업” 등 보조사업과 민간위탁사업의 사업자를 ●●으로 선정하고 ●●의 사업수행 내용을 지도·감독하였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제3항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2016. 2. 20. 행정자치부 예규 제45호) 12. 민간이전(307목)에 따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를 받은 자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44) V은 2016. 7. 27. 경기도 ■국 □장으로 보직변경 후 타이어 4개를 교환함

45) V은 경기능센터장의 직위에 있을 때 5백만 원을 요구했고 금품을 수수한 시기는 명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함

46) V은 이사 등 집안 문제로 당시 돈이 없어서 A로부터 5백만 원을 빌리게 되었고 당시 1년 뒤에 갚으려 했었다고 주장함. 그러나 V은 ① A로부터 금전을 차용했다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이자 등에 대한 논의도 없었던 점, ② 감사가 진행되자 2017. 5. 16. 급히 5백만 원을 A 계좌로 입금하였고 당시까지 A에게 5백만 원을 갚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 ③ 2016년 7월 말경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보증금 150백만 원을 수령하여 자신의 가족(부인과 딸)에게서 빌린 60백만 원은 바로 갚으면서 5백만 원은 갚지 않은 점, ④ 그리고 2017년 1월경 공무원퇴직금 중 일부인 180백만 원을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수령하여 다른 대출은 중도상환하면서 5백만 원은 갚지 않은 점, ⑤ V은 A가 ●●에서 보조금 사업 등을 통해 마련한 비자금에서 물품 및 5백만 원을 제공한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V은 A로부터 받은 5백만 원의 성격이 단순히 부당한 금전거래인지 불분명함

47) V은 경기도 화성시 소재 단독주택으로 이사하면서 방, 거실 바닥을 리모델링하는 데 5백만 원을 사용했다고 진술함

따라서 V은 사업자로 선정된 ●●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업체에 재위탁하지 않고 ●●의 책임하에 사업을 계획에 맞게 수행하도록 감독하여야 했다.

한편 ●●은 2016. 2. 25. “2016년 ㄱ사업”(사업비 890백만 원, 사업기간 2016년 2월 ~같은 해 12월)의 민간수탁사업자로 선정되어 자기 책임하에 사업을 수행하려고 계획하였다.

그런데 ▶▶유한회사(대표자 Y)가 2015년에 경기능센터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가 2016년부터 주식회사 ▼▼(대표이사 Z)가 상담창구를 운영하게 되자, V은 ▶▶유한회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6년 3월경 ㄱ사업과 관련하여 ●●의 A와 B를 불러 취업지원 사업분야(사업비 225백만 원)와 교육운영 사업분야(사업비 312백만 원)를 ▶▶유한회사에 재위탁하라고 요구⁴⁸⁾하는 등 [표 2]와 같이 V이 과거에 민간위탁사업과 보조사업을 함께 수행한 경험이 있는 다른 취업 관련 업체에 ●●이 수행하는 사업을 넘겨주라고 지시하였다.

[표 2] V의 지시로 재위탁한 사업 명세

(금액단위: 백만 원)

사업명	사업자	사업비	사업성격	재위탁 업체명	재위탁일	재위탁 사업비
2016년 ㄱ사업	●●	890	민간위탁	▶▶(유)	2016. 3.	537
2016년 ㅋ사업	●●	170	민간위탁	(주)◀◀	2016. 3.	82
				(주)▢▢		82
표사업	●●	219	민간위탁	(주)▼▼	2016. 4.	217
2016년 ㅈ사업	●●	1,000	민간위탁	(주)▼▼	2016. 4.	206
				◆◆		220
				♠♠		220
2016년 ㅎ사업	●●	80	민간경상보조	(주)▼▼	2016. 5.	70

자료: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48) A와 B은 최초에 V이 취업지원 사업분야만 ▶▶유한회사에 재위탁하라고 하였으나 후에 교육운영 사업분야까지 재위탁하라고 지시하여 두 가지 사업분야 모두 ▶▶유한회사에 재위탁하였다고 진술함

이에 ●●은 V의 지시⁴⁹⁾에 따라 민간수탁사업자와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사업의 일부를 [표 2]와 같이 재위탁하여 수행하게 되어 ►►유한회사 등은 사실상 공모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업자로 선정되는 특혜를 받게 되었다.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① **관련자 주장 및 판단** A와 B은 보조금을 빼돌려 부당하게 사용한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V은 ●●에 재위탁을 요구한 것과 관련하여 ●●의 사업수행 능력이 부족하여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다른 업체를 추천한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 V은 처음부터 사업수행 능력이 부족한 ●●을 보조사업자 및 민간수탁사업자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되었고, ㉡ V의 부하 직원인 당시 △팀 AA은 2016년 3월경 사석에서 V에게 “민간위탁사업과 보조사업은 재위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 V도 자신이 재수탁 기관을 추천하면 ●● 직원 입장에서는 부담을 느끼고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 ●● 직원 B 등은 ●●이 책임지고 사업을 수행하길 원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V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관계기관 의견** 경기도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보조금 집행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고 ●●이 지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보조금을 회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49) 당시 경기능센터 직원은 보조사업 및 민간위탁사업은 사업자 선정부터 모두 V이 관여하여 사업이 진행되었고 ●● 직원이 V이 정해 준 재위탁 업체를 통보하면 결재만 하였다고 진술함

조치할 사항

경기도지사는

① 사단법인 ●●가 “ㄱ사업” 등 23개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 계 656,238,544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등에 따라 사단법인 ●●와 A 등 부당 집행한 관계자로부터 회수하는 한편 그중 국고보조금액을 정산·확정하여 국고에 반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통보)

② V의 금품수수 비위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해당하여 엄중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위 사람이 2017. 1. 12. 퇴직한 바 있어 그 비위내용을 통보하오니 재단법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원장에게 통보하여 인사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통보(비위)]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사단법인 ●●가 “ㄴ사업” 및 “ㄷ사업”과 관련하여 지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국고보조금 계 192,725,000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에 따라 사단법인 ●●와 A 등 부당 집행한 관계자로부터 회수하여 국고에 반납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재단법인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ㄱ사업” 등과 관련하여 지원목적과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팀 팀장 A와 ≡팀 과장 B의 임용 전 비위행위를 통보하오니 이를 인사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통보(비위)]

[별표 1]

●● 보조사업 수행 현황(2013~2016년)

(금액단위: 천 원)

연번	보조금 교부기관	보조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a+b)	보조금 교부금액			●● 자부담(b)
					소계(a)	국비	도비	
1	경기도	ㄱ사업	'13.4.~'13.12.	535,000	535,000	400,000	135,000	-
2	경기도	-	'14.3.~'14.12.	542,800	542,800	380,000	162,800	-
3	경기도	ㄴ사업	'14.3.~'14.12.	221,985	221,985	221,985	-	-
4	경기도	-	'14.10.~'15.9.	228,100	200,000	-	200,000	28,100
5	경기도	-	'15.2.~'15.12.	500,000	500,000	-	500,000	-
6	경기도	-	'15.3.~'15.12.	1,166,700	1,166,700	1,050,000	116,700	-
7	경기도	-	'15.3.~'15.12.	312,500	312,500	250,000	62,500	-
8	경기도	-	'15.7.~'15.12.	220,000	220,000	220,000	-	-
9	경기도	-	'15.7.~'15.12.	80,000	80,000	80,000	-	-
10	경기도	ㅇ사업	'15.4.~'16.6.	210,000	200,000	-	200,000	10,000
11	경기도	-	'15.10.~'16.6.	400,000	400,000	-	400,000	-
12	경기도	-	'16.1.~'16.12.	463,600	463,600	-	463,600	-
13	경기도	-	'16.1.~'16.12.	192,800	192,800	-	192,800	-
14	경기도	-	'16.1.~'16.12.	115,500	115,500	-	115,500	-
15	경기도	ㅅ사업	'16.2.~'17.3.	500,000	500,000	-	500,000	-
16	경기도	'16년 ㄷ사업	'16.2.~'17.3.	1,000,000	1,000,000	-	1,000,000	-

연번	보조금 교부기관	보조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a+b)	보조금 교부금액			●● 자부담(b)
					소계(a)	국비	도비	
17	경기도	'16년 트사업	'16.3.~'16.12.	80,000	80,000	-	80,000	-
18	경기도	-	'16.3.~'16.12.	417,500	417,500	350,000	67,500	-
19	경기도	-	'16.3.~'16.12.	213,025	213,025	170,420	42,605	-
20	경기도	-	'16.3.~'16.12.	200,000	200,000	160,000	40,000	-
21	경기도	'16년 쏘사업	'16.2.~'16.12.	890,000	890,000	-	890,000	-
22	경기도	-	'16.4.~'16.12.	300,000	300,000	-	300,000	-
23	경기도	-	'16.2.~'16.12.	319,000	319,000	-	319,000	-
24	경기도	-	'13.8.~'14.7.	180,400	160,000	-	160,000	20,400
25	경기도	-	'13.2.~'13.12.	500,000	500,000	350,000	150,000	-
26	경기도	-	'13.1.~'13.12.	1,483,000	1,483,000	-	1,483,000	-
27	경기도	-	'14.1.~'14.12.	805,000	805,000	-	805,000	-
28	경기도	-	'14.1.~'14.12.	230,000	230,000	-	230,000	-
29	경기도	-	'14.1.~'14.12.	250,000	250,000	-	250,000	-
30	경기도	-	'14.6.~'14.12.	387,000	387,000	-	387,000	-
31	경기도	-	'14.3.~'14.12.	216,900	216,900	152,000	64,900	-
32	경기도	-	'15.2.~'15.12.	84,000	84,000	-	84,000	-
33	경기도	-	'15.2.~'15.12.	150,000	150,000	-	150,000	-
34	경기도	-	'15.2.~'15.12.	60,000	60,000	-	60,000	-

연번	보조금 교부기관	보조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a+b)	보조금 교부금액			●● 자부담(b)
					소계(a)	국비	도비	
35	경기도	-	'15.2.~'15.12.	60,000	60,000	-	60,000	-
36	경기도	-	'15.2.~'15.12.	495,000	495,000	-	495,000	-
37	경기도	-	'15.4.~'15.12.	260,000	260,000	-	260,000	-
38	경기도	-	'15.2.~'16.1.	722,500	700,000	-	700,000	22,500
39	경기도	-	'16.1.~'16.12.	200,000	200,000	-	200,000	-
40	경기도	-	'16.1.~'16.12.	200,000	200,000	-	200,000	-
41	경기도	'16년 ㅎ사업	'16.1.~'16.12.	80,000	80,000	-	80,000	-
42	경기도	'16년 ㅋ사업	'16.2.~'16.12.	170,000	170,000	-	170,000	-
43	경기도	'16년 ㅍ사업	'16.3.~'16.12.	219,600	219,600	-	219,600	-
소계	경기도	43개 사업	-	15,861,910	15,780,910	3,784,405	11,996,505	81,000
44	한국산업 인력공단	'13년 ㄴ사업	'13.3.~'14.2.	653,358	486,828	486,828	-	166,530
45	한국산업 인력공단	'14년 ㄷ사업	'14.3.~'14.11.	971,250	743,950	743,950	-	227,300
소계	한국산업 인력공단	2개 사업	-	1,624,608	1,230,778	1,230,778	-	393,830
합계	-	총 45개 사업	-	17,486,518	17,011,688	5,015,183	11,996,505	474,830

자료: 경기도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출자료

[별표 2]

계약대금 허위·과다 지급 명세

(금액단위 : 원)

연번	교부 기관	보조사업명	계약 내용	계약업체 (관련자)	보조금 지급액 (지급일자)	보조금 회수액 (견적가와의 차액)	회수계좌 명의
1	경기도	'13년 ㄱ사업	홍보물 제작·인쇄	◁◁ (대표 D)	59,900,000 ('13. 8. 7. 등 5회)	15,000,000	D
2	한국산업 인력공단	'14년 ㄴ사업	실습 소프트 웨어 임차	♂♂ 주식회사 (차장 -)	54,000,000 ('14. 11. 3. 등 2회)	4,000,000	
3	경기도	'15년 ㄷ사업	네일아트 재료비	- (대표 T)	24,000,000 ('15. 7. 8.)	11,500,000	
4	경기도	'15년 ㄷ사업	네일아트 재료비	- (대표 -)	12,000,000 ('15. 5. 15.)	4,800,000	
5	경기도	-	통근버스 임차	주식회사 ♀♀ (부장 U)	125,948,387 ('15. 7. 16. 등 8회)	27,351,695	
6	경기도	-	통근버스 임차	주식회사 ♀♀ (부장 U)	192,000,000 ('16. 5. 9. 등 9회)	32,931,800	E
7	경기도	-	버스 임차	주식회사 ♀♀ (부장 U)	11,396,000 ('16. 12. 23.)	4,426,800	
소계		6개 사업	-	5개 업체	479,244,387	100,010,295 (횡령금액)	D: 62,651,695 E: 37,358,600
8	경기도	-	네일아트 재료비	◇◇ (대표 H)	48,000,000 ('16. 4. 11. 등 3회)	19,640,000	G
소계		1개 사업	-	1개 업체	48,000,000	19,640,000 (횡령금액)	G: 19,640,000
9	한국산업 인력공단	'13년 ㄴ사업	PLC 장비 구입	♡♡ (대표 I)	117,452,500 ('13. 6. 25. 등 2회)	0	-
소계		1개 사업	-	1개 업체	117,452,500 (횡령금액)	0	-

연번	교부 기관	보조사업명	계약 내용	계약업체 (관련자)	보조금 지급액 (지급일자)	보조금 회수액 (건적가와의 차액)	회수계좌 명의
10	한국산업 인력공단	‘14년 ㄷ사업	PLC 장비 임차	▷▷	6,000,000 (‘14. 4. 30.)	42,000,000	D
					15,000,000 (‘14. 6. 27.)		
					21,000,000 (‘14. 9. 11.)		
11	경기도	‘15년 ㄹ사업	PLC 장비 임차	▷▷	15,000,000 (‘15. 4. 10.)	30,000,000	
					15,000,000 (‘15. 6. 16.)		
소계		2개 사업 (PLC 임차)	-	1개 업체	72,000,000	72,000,000 (횡령금액)	D: 72,000,000
합계	경기도	6개 사업	-	6개 업체	503,244,387	횡령: 145,650,295 회수: 145,650,295	D: 134,651,695 G: 19,640,000 E: 37,358,600
	한국산업 인력공단	2개 사업	-	3개 업체	213,452,500	횡령: 163,452,500 회수: 46,000,000	
	계	8개 사업	-	8개 업체	716,696,887	횡령: 309,102,795 회수: 191,650,295	

- 주 : 1. ‘합계’와 ‘소계’에 나와 있는 보조사업 수, 업체 수는 각각 중복된 사업 등을 제외한 수치임
2. ‘합계’에 나와 있는 횡령금액 309,102,795원은 건적가와의 차액을 돌려받거나(‘연번 1~8번’ 보조금 회수액 계 119,650,295원), PLC 장비 임차비를 구매 용도로 집행하고(‘연번 9번’ 보조금 지급액 117,452,500원), D에 PLC 장비 임차 명목으로 부당 지급한 금액(‘연번 10~11’ 보조금 지급 및 회수액 계 72,000,000원)의 합계이며 회수금액 191,650,295원은 횡령금액 중 구매 용도로 집행을 PLC 장비 임차비(117,452,500원)를 제외한 금액임
3. ‘합계’에 나와 있는 경기도 보조사업(6개)은 ‘ㄱ사업, ’ㄴ사업, ’-사업, ’-사업, -사업, ’-사업임
4. ‘합계’에 나와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보조사업(2개)은 ’ㄴ사업, ’ㄷ사업임
- 자료: 관련자 진술 및 보조사업실적보고서, D 명의 계좌 거래내역 등 재구성

[별표 3]

외부 강사비 허위·과다 지급 명세

(금액단위 : 원)

구분	연번	보조금 교부기관	보조사업명	강사비 지급대상	강사비 (보조금) 지급일	보조금 지급액	보조금 회수액	회수계좌 명의
강 사 비 과 다 지 급	1	경기도	-	J 외 13명	'14.11.7.~ '14.12.29.(77회)	56,212,800	26,735,752	· E
	2	경기도	-	-	'16.3.23.~ '16.10.20.(8회)	12,332,400	9,866,080	
	3	경기도	-	-	'15.12.22. '15.12.28.(2회)	9,560,000	8,000,000	
	4	경기도	-	-	'15.12.22. '15.12.28.(2회)	9,560,000	8,000,000	
	5	경기도	-	-	'15.11.13.(1회)	1,223,680	1,200,000	
	6	경기도	-	-	'15.11.13.(1회)	1,223,680	1,200,000	
	7	경기도	-	-	'16.12.29.(1회)	9,177,600	7,340,000	
	계		7개 사업	20명	총 92회	99,290,160	62,341,832 (횡령금액)	
	8	한국산업 인력공단	'13년 L사업, '14년 D사업	J, -, -	'14.12.30. '16.1.5.(6회)	13,215,180	10,312,500	
	9	한국산업 인력공단	'14년 D사업	-	'14.9.26.(1회)	10,038,000	2,790,000	
	10	한국산업 인력공단	'14년 D사업	-	'14.9.26.(1회)	13,384,000	2,790,000	
	11	한국산업 인력공단	'14년 D사업	-	'14.9.26.(1회)	13,384,000	13,380,000	
	계		2개 사업	7명	총 9회	50,021,180	29,272,500 (횡령금액)	
	소계		9개 사업	23명	총 101회	149,311,340	91,614,332 (횡령금액)	· E: 91,614,332
	12	경기도	-	L 외 10명	'15.9.23.~ '16.12.22.(198회)	139,958,400	71,513,360	· N · A
	소계		8개 사업	11명	총 198회	139,958,400	71,513,360 (횡령금액)	· N: 11,697,280 · A: 59,816,080
	13	경기도	-	H -	'14.12.8.(3회)	860,400	600,000	· G
	14	경기도	'15년 D사업 등 4개 사업	H -	'15.7.13.~ '16.12.20.(28회)	110,036,480	81,197,228	
	15	경기도	'15년 D사업 등 3개 사업	-	'15.9.7.~ '16.9.13.(7회)	23,326,400	18,493,360	
	16	경기도	'15년 O사업 등 2개 사업	-	'15.11.20.~ '16.6.20.(10회)	10,324,800	9,691,600	
	17	경기도	'15년 O사업 등 3개 사업	-	'15.5.29.~ '16.12.20.(16회)	32,504,000	27,355,600	

구분	연번	보조금 교부기관	보조사업명	강사비 지급대상	강사비 (보조금) 지급일	보조금 지급액	보조금 회수액	회수계좌 명의
	18	경기도	-	-	'16.1.26.~ '16.9.13.(7회)	39,016,800	24,523,840	· G
	19	경기도	-	-	'15.9.7.~ '16.9.13.(9회)	45,131,200	31,446,760	
	20	경기도	'15년 ○사업	-	'15.8.10.(1회)	1,434,000	1,434,000	
	소계		8개 사업	9명	총 81회	262,634,080	194,742,388 (회령금액)	· G: 194,742,388
강 사 비 허 위 지 급	21	경기도	'16년 △사업 등 3개 사업	P	'15.9.25.~ '16.10.20.(14회)	21,414,400	19,600,000	· N · A · G · R
	22	경기도	'16년 △사업	Q	'16.4.25.~ '16.10.20.(8회)	13,766,400	12,000,000	
	23	경기도	- 사업	R	'15.11.12.~ '16.10.20.(18회)	41,681,600	41,681,600	
	소계		7개 사업	3명	총 40회	76,862,400 (회령금액)	73,281,600	· N: 31,600,000 · A: 18,800,000 · G: 19,261,400 · R: 3,620,200
합 계	경기도		13개 사업	43명	총 411회	578,745,040	회령: 405,459,980 회수: 401,879,180	· G: 214,003,788 · R: 3,620,200 · N: 43,297,280 · E: 91,614,332 · A: 78,616,080
	한국산업 인력공단		2개 사업	7명	총 9회	50,021,180	회령: 29,272,500 회수: 29,272,500	
	계		15개 사업	46명	총 420회	628,766,220	회령: 434,732,480 회수: 431,151,680	

주 : 1. '합계'와 '소계'에 나와 있는 보조사업 수, 강사 수는 각각 중복된 사업 등을 제외한 수치임

2. '합계'에 나와 있는 회령금액 434,732,480원은 강사비를 과다 지급한 후 과다 지급된 금액을 돌려받거나('연번 1~20번' 보조금 회수액 계 357,870,080원) 허위로 강사비를 지급한 금액('연번 21~23번' 보조금 지급액 계 76,862,400원)의 합계이며, 회수금액 431,151,680원은 회령금액 중 P와 Q에게 강사비를 허위로 지급하고 돌려받지 않은 강사비(3,580,800원)를 제외한 금액임

3. '합계'에 나와 있는 경기도 보조사업(13개)은 '△사업', '△사업', '△사업', '△사업', '15년 ○사업', '△사업', '15년 □사업', '△사업', '△사업', '△사업', '△사업', '16년 △사업'임

4. '합계'에 나와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보조사업(2개)은 '13년 △사업', '14년 △사업'임

자료: 관련자 진술 및 A 명의 계좌거래내역 등 재구성

[별표 4]

사업전담자 인건비 허위·과다 지급 명세

(금액단위: 원)

구분	연번	보조금 교부 기관	보조사업명	인건비 지급 대상자	인 건 비 (보 조 금) 지 급 일	보조금 지급액	보조금 회수액	회수계좌 명의
인 건 비 허 위 지 급	1	경기도	'15년 ○사업	S	'15. 11. 20. '15. 12. 18.	7,080,000	7,080,000	S
	2	경기도	-	S	'15. 11. 20. '15. 12. 18.	1,748,780	1,748,780	
	3	경기도	-	T	'15. 9. 18.~ '15. 12. 18. (총 4회)	4,530,190	4,530,190	G
	소계	경기도	3개 사업	2명	총 8회	13,358,970	13,358,970	S: 8,828,780 G: 4,530,190
인 건 비 과 다 지 급	4	경기도	'15년 ○사업 등 4개 사업	-	'16. 2. 19.~ '16. 12. 20. (총 23회)	30,879,388	4,965,400	N
	5	경기도	-	-	'16. 2. 19.~ '16. 9. 20. (총 14회)	26,707,457	2,036,627	
	6	경기도	-	-	'16. 2. 19.~ '16. 12. 20. (총 24회)	32,022,704	5,041,984	
	7	경기도	-	-	'16. 2. 19.~ '16. 8. 20. (총 17회)	14,188,746	1,498,931	
	8	경기도	-	B	'16. 2. 19.~ '16. 12. 20. (총 59회)	77,321,680	9,842,630	
	9	경기도	-	-	'16. 2. 19.~ '16. 8. 20. (총 17회)	19,093,750	1,814,170	
	10	경기도	-	F	'16. 2. 19.~ '16. 12. 20. (총 39회)	48,400,377	8,454,367	
	11	경기도	-	-	'16. 4. 20.~ '16. 12. 20. (총 20회)	27,543,480	5,336,080	
	12	경기도	-	N	'16. 2. 19.~ '16. 12. 20. (총 38회)	58,587,895	9,867,890	
	13	경기도	'15년 ○사업 등 6개 사업	-	'16.2.19.~ '16.12.20. (총 35회)	67,506,760	9,914,370	

구분	연번	보조금 교부 기관	보조사업명	인건비 지 급 대상자	인 건 비 (보 조 금) 지 급 일	보조금 지급액	보조금 회수액	회수계좌 명의
	14	경기도	-	-	'16. 3. 24.~ '16. 12. 20. (총 30회)	47,961,260	9,756,580	N
	15	경기도	-	-	'16. 2. 19.~ '16. 12. 20. (총 30회)	67,367,800	7,963,550	
	16	경기도	-	M	'16. 2. 19.~ '16. 12. 20. (총 38회)	60,341,220	11,076,720	
	17	경기도	-	N M -	'16. 4. 20.~ '16. 5. 20. (총 20회)	-	4,200,000	A
	소계	경기도	13개 사업	13명	총 384회	577,922,517	91,769,299	N: 87,569,299 A: 4,200,000
합계	경기도		14개 사업	15명	총 392회	591,281,487	105,128,269 (횡령금액)	S: 8,828,780
								G: 4,530,190
								N: 87,569,299
								A: 4,200,000

주 : 1. '인건비 지급대상자'는 해당 보조사업 전담자 또는 전담 보조자로 등록된 자들임

2. '합계'와 '소계'에 나와있는 보조사업 수, 인건비 지급대상자 인원수는 각각 중복된 사업 등을 제외한 수치임

3. '연번 17'의 A 명의 계좌 회수금 4,200,000원은 N가 M, AF, AM으로부터 받은 현금과 N 본인의 현금을 합친 금액(계 4,200,000원)을 A 계좌로 입금한 것임

4. '합계'에 나와 있는 횡령금액 105,128,269원은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하거나('연번 1~3번' 보조금 지급 및 회수액 계 13,358,970원) 인건비를 과다 지급한 후 과다 지급된 금액을 돌려받은 금액('연번 4~17번' 보조금 회수액 계 91,769,299원)의 합계임

5. '합계'에 나와 있는 경기도 보조사업(14개)은 '15년 ○사업, -사업, -사업, '16년 ㅅ사업, -사업, '-사업, '16년 ㅈ사업, '-사업, '-사업, '16년 ㅊ사업, -사업, '16년 ㅊ사업, '-사업, '16년 ㅊ사업, '-사업임

자료: 관련자 진술 및 N 명의 계좌 거래내역 등 재구성

[별표 5]

●●의 보조사업비 부당사용 명세

(금액단위 : 원)

연번	보조금 교부기관	보조사업명	계약업체 또는 지급대상자	집행내용	보조금지금액	부당사용금액
1	경기도	'13년 ㄱ사업	◁▷ (대표 D)	계약 (홍보물 제작·인쇄)	59,900,000	15,000,000
2	경기도	'15년 ㄴ사업	- (대표 T)	계약 (네일아트 재료비)	24,000,000	11,500,000
3	경기도	'15년 ㄴ사업	- (대표 -)	계약 (네일아트 재료비)	12,000,000	4,800,000
4	경기도	-	주식회사 ㉸ (부장 U)	계약 (통근버스 임차)	125,948,387	27,351,695
5	경기도	-	주식회사 ㉸ (부장 U)	계약 (통근버스 임차)	192,000,000	32,931,800
6	경기도	-	주식회사 ㉸ (부장 U)	계약 (버스 임차)	11,396,000	4,426,800
7	경기도	-	◇◇ (대표 H)	계약 (네일아트 재료비)	48,000,000	19,640,000
8	경기도	'15년 ㄴ사업	▷▷	계약 (PLC 장비 임차)	30,000,000	30,000,000
9	경기도	-사업 등 5개 사업	J 외 13명	강사비	56,212,800	26,735,752
10	경기도	-	-	강사비	12,332,400	9,866,080
11	경기도	'15년 ㄴ사업	-	강사비	9,560,000	8,000,000
12	경기도	'15년 ㄴ사업	-	강사비	9,560,000	8,000,000
13	경기도	-	-	강사비	1,223,680	1,200,000
14	경기도	-	-	강사비	1,223,680	1,200,000
15	경기도	-	-	강사비	9,177,600	7,340,000
16	경기도	'15년 ㄴ사업 등 8개 사업	L 외 10명	강사비	139,958,400	71,513,360

연번	보조금 교부기관	보조사업명	계약업체 또는 지급대상자	집행내용	보조금지금액	부당사용금액
17	경기도	'14년 B사업	H, - -	강사비	860,400	600,000
18	경기도	'15년 B 사업	H, - -	강사비	110,036,480	81,197,228
19	경기도	'15년 B사업 등 3개 사업	-	강사비	23,326,400	18,493,360
20	경기도	'15년 B사업 등 2개 사업	-	강사비	10,324,800	9,691,600
21	경기도	'15년 B사업 등 3개 사업	T	강사비	32,504,000	27,355,600
22	경기도	-	-	강사비	39,016,800	24,523,840
23	경기도	'15년 B 사업 등 3개 사업	-	강사비	45,131,200	31,446,760
24	경기도	'15년 B사업	-	강사비	1,434,000	1,434,000
25	경기도	'16년 A사업 등 3개 사업	P	강사비	21,414,400	21,414,400
26	경기도	'16년 A사업	Q	강사비	13,766,400	13,766,400
27	경기도	'15년 B사업 등 5개 사업	R	강사비	41,681,600	41,681,600
28	경기도	'15년 B사업	S	인건비	7,080,000	7,080,000
29	경기도	-	S	인건비	1,748,780	1,748,780
30	경기도	-	T	인건비	4,530,190	4,530,190
31	경기도	'15년 B사업 등 4개 사업	-	인건비	30,879,388	4,965,400
32	경기도	- 사업 등 3개 사업	-	인건비	26,707,457	2,036,627
33	경기도	- 사업 등 4개 사업	-	인건비	32,022,704	5,041,984
34	경기도	- 사업 등 3개 사업	-	인건비	14,188,746	1,498,931
35	경기도	'15년 B사업 등 8개 사업	B	인건비	77,321,680	9,842,630
36	경기도	- 사업 등 4개 사업	-	인건비	19,093,750	1,814,170

연번	보조금 교부기관	보조사업명	계약업체 또는 지급대상자	집행내용	보조금지급액	부당사용금액
37	경기도	-업 등 5개 사업	F	인건비	48,400,377	8,454,367
38	경기도	-사업 등 3개 사업	-	인건비	27,543,480	5,336,080
39	경기도	-사업 등 5개 사업	N	인건비	58,587,895	9,867,890
40	경기도	'15년 ○사업 등 6개 사업	-	인건비	67,506,760	9,914,370
41	경기도	-사업 등 4개 사업	-	인건비	47,961,260	9,756,580
42	경기도	-사업 등 4개 사업	-	인건비	67,367,800	7,963,550
43	경기도	-사업 등 5개 사업	M	인건비	60,341,220	11,076,720
44	경기도	-사업 등 8개 사업	N,M, -, -	인건비	-	4,200,000
경기도 소계(a)					1,673,270,914	656,238,544
45	한국산업 인력공단	'14년 □사업	♂♂ 주식회사 (차장 -)	계약 (실습소프트 웨어 임차)	54,000,000	4,000,000
46	한국산업 인력공단	'13년 ▮사업	♡♡ (대표 I)	계약 (PLC 장비 구입)	117,452,500	117,452,500
47	한국산업 인력공단	'14년 □사업	▷▷	계약 (PLC 장비 임차)	42,000,000	42,000,000
48	한국산업 인력공단	'13년 ▮사업 '14년 □사업	J, -, -, -	강사비	13,215,180	10,312,500
49	한국산업 인력공단	'14년 □사업	-	강사비	10,038,000	2,790,000
50	한국산업 인력공단	'14년 □사업	-	강사비	13,384,000	2,790,000
51	한국산업 인력공단	'14년 □사업	-	강사비	13,384,000	13,380,000
한국산업인력공단 소계(b)					263,473,680	192,725,000
합계(a+b)					1,936,744,594	848,963,544

주: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의 보조사업비 부당사용 세부내역을 정리한 것임

자료: 관련자 진술 및 관련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등 재구성

감 사 원

징 계 요 구

제 목 국고보조사업을 특정업체에 재위탁하도록 부당 개입

소 관 기 관 경기도

조 치 기 관 경기도

내 용

경기도 ○본 본부장 AB는 2013. 7. 8.부터 2015. 7. 14.까지 경기도 ▲실 ▲과장의 직위에서 일자리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2015. 6. 26.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국고보조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사단법인 ●●(회장 X, 이하 “●●”이라 한다)를 “ㄱ 사업”⁵⁰⁾의 보조사업자로 선정한 후 국고보조금⁵¹⁾ 220,000,000원을 교부하고 이를 감독하였다.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거나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AB는 고용노동부로부터 ㄱ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승인받기 전이던 2015년 3월경 ●●을 방문하여 ㄱ장 K 등에게 ㄱ사업을 수행할 것을 제안하면서 주

50) 경기도 내 우수 중소기업의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지역 케이블방송, 인터넷 등의 매체에 방영함으로써 지역인재의 구직과 우수기업의 구인을 매칭하기 위한 사업임

51) 경기도는 2015년도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어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인센티브)” 국고보조금 400백만 원을 지원받게 됨.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로부터 국고보조금 400백만 원 중 250백만 원으로 “ㄱ사업”을 수행하겠다는 계획을 승인받아 이 중 220백만 원을 ●●에 재교부함

식회사 ♣♣ 수원지사⁵²⁾의 대표이사 AC(이하 “♣♣”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 수원방송⁵³⁾(대표이사 AD, 이하 “♥♥”라 한다)의 직원 AE을 ●●으로 불러 K 등에게 소개하는 한편, 향후 ●●이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맡게 될 사업 중 중소기업 홍보 영상물 제작 사업과 영상물의 케이블TV 방영 사업을 각각 ♣♣ 및 ♥♥와 같이 진행 하도록 부탁하였다.

이후에도 AB는 ●●을 2차례 방문하여 ●●과 위 사업관련 협의를 하면서 AC 및 AE을 참여시켜 함께 협의하도록 하였고, AC과 AE은 AB가 마련한 협의자리에서 중소기업 홍보 영상물 제작 및 케이블TV 방영 등 분야별 사업비를 배분하였다.

이에 따라 ●●은 2015. 6. 10. AB 및 AC 등과 협의한 대로 ㄱ사업의 사업계획서⁵⁴⁾를 경기도에 제출하여 같은 해 8. 13.과 10. 30. 국고보조금 계 220,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과 중소기업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는 내용의 계약(계약금액: 81,500,000원)을, ♥♥와 제작된 중소기업 홍보 영상물을 지역 케이블TV에 방영하는 내용의 계약(계약금액: 60,000,000원)을, ★★주식회사⁵⁵⁾(이하 “★★”이라 한다)와 제작된 중소기업 홍보 영상물을 웹포털에 게재하는 내용의 계약(계약금액: 50,000,000원)을 각각 체결하여 ㄱ사업의 보조금을 ♣♣ 등에 지급하였다.

한편 ●●은 ♣♣과 계약을 체결하여 중소기업 홍보 영상물 120편을 제작·납품

52) 주식회사 ♣♣은 AC의 배우자가 운영하고 있으나, AC은 2015. 8. 17. 주식회사 ♣♣(수원지점)을 사업자로 등록하여 통장을 개설한 후 같은 해 8. 20.부터 ●●으로부터 영상물 제작대금을 지급받음

53) 주식회사 ♥♥와 별도로 2015. 9. 22. 주식회사 ♥♥(수원방송)로 사업자를 등록한 회사임

54)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직접사업비는 영상물 제작비, 방송비, 웹포털 및 OTT(인터넷 TV) 이용료 계 196,300,000원을 모두 채워타하여 집행하고, 간접사업비(인쇄비 등)와 사업수행자 인건비 계 23,700,000원은 ●●이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55) ★★은 ●●과 OTT(Over the top, 인터넷 TV) 방식으로 영상물을 웹포털에 게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의 ㄱ사업 담당자 AF은 AC이 ★★와 계약하도록 하면서 계약금액 및 내용을 정했고, ●●은 그 내용대로 대금만 지급하였다고 함

하도록 하면서 보조금 81,5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이 계약내용과 다르게 영상물 85편만을 제작·납품함에 따라 경기도로부터 ♣♣이 제작하지 않은 영상물 35편에 대한 보조금 15,312,000원을 반납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은 ♣♣에 15,312,000원을 부담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이 “영상물 제작과 관련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면서 반납금액 부담을 거부⁵⁶⁾하자 ●●의 자금으로 위 금액을 반납하였다.

이와 같이 AB는 ㄱ사업의 보조사업자인 ●●에 AC 등을 소개하여 ●●으로 하여금 국고보조금을 ♣♣ 등에 집행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 ㄱ사업 관련 계약내용도 이행하지 않은 ♣♣이 부당한 이득을 얻게 되었다.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① **관련자 주장 및 판단** AB는 ●●에 ㄱ사업을 처음 제안할 때 AC, AE에게 “(●●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논의하는 자리에 참석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과 AC 등이 ●● 관계자들과 함께 협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에 사업을 제안하는데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AC 등에게 논의하는 자리에 참석해 달라고 부탁만 했을 뿐이고 ●●이 ♣♣ 및 ♥♥ 등과 사업을 수행한 것은 ●●이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 ●●의 ㄱ장 K 등은 AB가 AC 등과 ㄱ사업을 수행하도록 요구했기 때

56) ●●과 ♣♣이 체결한 계약서에 따르면 ♣♣이 계약의 내용(영상물 120편)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 배상 등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손해발생을 이유로 금액 반납을 거절할 수 없음

문에 ♣♣ 등과 중소기업 홍보 영상물 제작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점, ㉔ 보조사업자인 ●●은 보조금 219,733,760원을 사용하면서 사업수행자 인건비 등으로 계 28,233,760원만을 직접 집행하였을 뿐 나머지 보조금 계 191,500,000원을 AB가 소개한 AC 등과 관련 있는 업체에 집행한 사실을 고려할 때 ●●이 스스로 ♣♣ 등과 계약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㉕ AE이 사업협의 과정에서 “(송출)비용이 예상했던 것보다 적어서 어려우니 영상물 제작단가를 낮추고 비용을 조정하자”고 요구하는 등 AB가 마련한 자리에서 중소기업 홍보 영상물의 제작 및 방송 등 분야별 사업비 배분을 협의한 점, ㉖ AB가 ●●에 사업을 제안하기 전에 이미 AC 등에게 사업내용을 설명함은 물론 AC 등과 함께 ●●에 사업을 제안한 점 등을 볼 때 AB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관계기관 의견 경기도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특정 업체와 계약하도록 개입한 AB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적법한 조치를 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징계요구 양정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에 위배하여 보조사업자인 ●●에 ♣♣ 등 특정업체를 소개하고 보조사업 관련 계약을 하도록 개입한 AB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등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에 위배하여
●●의 보조사업 관련 계약에 개입한 AB를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징계처
분(경징계 이상)하시기 바랍니다.(징계)

감 사 원

주의요구 및 통보(인사자료)

제 목 보조사업과 무관한 도정 홍보사업을 위해 보조금을 부당 집행

소 관 기 관 경기도

조 치 기 관 경기도

내 용

1. 사건 개요

경기도는 도정을 홍보할 목적으로 2015년 5월경 주식회사 ○○가 발간하는 ‘○○’의 별책부록 “ㄷ”를 제작·발간하는 한편, 같은 해 8월경 ◇◇주식회사가 발간하는 ‘ㄱ’에 제2판교테크노벨리를 홍보하는 기획기사의 연재를 추진하였다.

위 홍보사업은 당초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았으나 경기도는 사단법인 ●●(회장 X, 이하 “●●”이라 한다)⁵⁷⁾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보조금을 지급한 후 ●●으로 하여금 보조금을 재원으로 주식회사 ○○ 등에 경기도 대신 ●●이 지급하도록 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관계 법령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에 따르면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2조의4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57) ●●은 1999. 1. 27. 경기도 경제단체 간의 친목 등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경기도는 조례 등을 통하여 ●●을 지원해 왔고, 2014. 5. 25.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 개정으로 경기도가 ●●의 일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은 2016. 12. 6. 해산함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2조의6 및 제32조의8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6조 및 제30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사업을 완료한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도록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ㄸ 별책부록 제작·발간 비용 집행 부적정

경기도(●실, ◎실)는 2015년 상반기부터 경기도지사(AG) 취임 1주년에 맞추어 도지사의 도정 운영 방향 등에 대한 인터뷰를 비롯하여 홍보책자를 발간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가 발간하는 ‘ㄸ’의 별책부록 “ㄸ”⁵⁸⁾ 제작·발간을 추진하였다.

한편 경기도의 2015년도 세출예산에는 경기도가 도정 홍보를 위해 추진해 오던 “ㄸ” 사업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 홍보사업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경기도는 ◎장 AH⁵⁹⁾이 주식회사 ◎◎ 관계자와 홍보책자를 발간·배포하는 대가로 지급할 금액(55백만 원)⁶⁰⁾을 협의한 다음 2015년 5월경 ◎실·●실·

58) ㄸ는 2015년 7월호 별책으로 “ㄸ”를 정기 발행부수만큼 제작·발간하여 전국에 배포하였음

59) AH은 2014. 8. 21. 경기도 서울사무소장으로 채용되었고 같은 해 12. 15.부터 2017. 6. 26. 현재까지 경기도지사으로 재직 중임

60) ◎실 AH과 ●담당관 AI 등은 위 홍보책자 발간비용이 55 만 원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경기도는 이와 관련하여 공식

○실이 홍보책자 발간에 필요한 재원 마련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여 ○실(●담당관실)이 재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협의한 후, ○실(●담당관실)은 ●●으로 하여금 경기도 대신 주식회사 ●●에 55백만 원을 지급하도록 지시하였다.

● ● AH ● ●

홍보책자 발간 비용을 대신 지급하기 어렵다고 하자, 경기도(●담당관실)는 ●●에 교부할 보조사업비로 지급하도록 지시⁶¹⁾하였다.

이에 따라 ●●의 Ⅱ장 K과 □본부장 A 등은 경기도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경기도로부터 지원받은 보조사업비에서 자금을 마련하여 주식회사 ●●에 지급하기로 하고, [표]와 같이 경기도가 ●●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교부한 “(경기도 보조금 260백만 원) 사업 보조금에서 2015. 9. 8. 등 3회에 걸쳐 “FTA활용지원센터 이용안내 홍보” 명목⁶²⁾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인터넷 지로 납부)을 통해 주식회사 ●●에 33백만 원을 지급하였다.⁶³⁾

문서로 처리하지 않아 정확한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되지 않음. 경기도가 ●●에 대금을 대신 지급하라고 지시하면서 ●● 외에 다른 기관·단체도 부담한다고 했다는 ●● 관계자의 진술, 홍보책자의 발간면수(133면), 발간부수(‘ㄴ’의 발간부수) 등을 고려할 때 실제 협의된 금액이 55백만 원인지는 명확하지 않음

61) K과 A는 AI이 “2015년 메르스 사업비에서 대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하나, AI은 보조사업비에서 대금을 지급하라고 한 사실은 없고, ●●에 막연히 일반 홍보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대금을 지급하라고 했다고 진술함

62) 위 별책은 경기도지사 AG의 도정 운영 방향 등에 대한 인터뷰, AG의 주요 정책인 야당과의 연정, 따복 공동체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24개가량의 기사 형태로서 133페이지 분량의 책자로 제작하여 홍보하는 것으로 ●●의 고유업무(경기도 경제단체간의 친목 도모, 경제단체의 의사를 집약, 정부의 경제정책지원 등)나 ●●이 경기도 등으로부터 사업자로 선정되어 수행하고 있는 구직자 교육 및 취업 지원 등 각종 일자리 보조사업 또는 민간위탁사업 등과는 무관하고, 기사 내용 중 FTA 관련 내용은 없었음

63) K과 A는 AI이 ‘메르스 극복지원사업에서 비자금을 조성하여 대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으나,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 홍보 사업 예산에 여유가 있어 ‘FTA활용지원센터 이용안내 홍보’ 명목으로 33백만 원을 주식회사 ●●에 지급하였으며, 실제로는 ㄴ에 FTA 활용지원센터 이용안내 홍보 광고가 게재되지는 아니하였다고 진술함

[표] ●●이 경기도 도정 홍보비로 ㄱ에 지급한 명세

(단위: 백만 원)

날짜	지급인	수령인	지급 금액	지급명목 등	비고 (자금출처)
2015. 9. 8.	●●	한국언론진흥재단 (주식회사 ○○)	11	FTA활용지원센터 이용안내 홍보(-) * 실제 홍보 광고 미게재	ㄴ 사업 (경기도 보조사업, 사업비 260백만원)
2015. 10. 12.			11		
2015. 10. 15.			11		
2015. 12. 22.	▷▷ (경기능력개발원)	주식회사 ○○	11	광고비 * 실제 광고 미게재	ㄷ 사업 (국비공모 보조사업, 총사업비 1,166 백만원, 국비 80%, 경기도비 20%)
2016. 1. 13.			11		

자료: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또한 경기도 보조사업인 “ㄱ”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주식회사 ㄴ과 계약금액을 부풀려 허위 계약(금액 125,948,387원)을 맺은 후 주식회사 ㄴ로부터 주식회사 ▷
▷⁶⁴⁾의 계좌로 되돌려받아 마련하였던 자금(27백만 원)으로 주식회사 ▷▷과 주식
회사 ○○ 간의 거래로 가장하는 방법으로 [표]와 같이 2015. 12. 22.과 2016. 1.
13. 주식회사 ○○에 계 22백만 원을 지급하는 등 모두 5회에 걸쳐 계 55백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경기도가 ●●을 보조사업자로 선정·교부한 보조금을 보조사업의 목
적과 달리 도정 홍보를 위한 ‘ㄴ’의 별책부록 “ㄷ”를 발간·배포⁶⁵⁾하는 데에 사용하도
록 지시함으로써 보조금이 교부 목적과 달리 집행되게 되었다.

64) 주식회사 ▷▷은 2012년 말경 당시 ●● ㄷ장 C가 A와 상의하면서 ●● 사업을 위하여 별도의 법인을 만들기로 하여 설
립한 회사로 ●●이 경기도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에서 비자금을 조성할 때 활용된 회사임

65) 경기도는 “ㄷ” 책자를 ‘ㄴ’의 별책부록으로 발간·배포하는 것과는 별도로 2015년 6월경 주식회사 ○○로부터 위 책
자 1,000부를 송부받아 시·군 등에 500~600부 가량 배부하고 나머지는 파쇄하였음

나. 수도권 규제 피해실태조사 도비보조금 감독·정산업무 등 처리 부적정

경기도는 2014년 10월경 ●●으로부터 “ㄴ 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아 2015년도 ●● 사업지원 예산을 편성한 후, 2015. 8. 17. ●●으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 2015. 8. 21.과 2015. 11. 6. 지방보조금 계 150백만 원을 교부하고 이를 감독하였다.

한편 ●●은 2014년 10월경 경기도에 2015년도 민간경상보조사업비를 신청하면서 수도권 규제에 따른 피해실태를 조사하여 사례집을 발간·배포하는 내용으로 ‘ㄴ’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였고, 2015. 8. 17.에는 위 사업을 세부항목별로 구분하여 규제 피해실태조사와 조사자료를 분석하는 데 90백만 원을⁶⁶⁾, 규제완화 전략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데 10백만 원을, 규제피해 실태와 관련한 언론 홍보를 하는 데 50백만 원(중앙언론 3회, 지방언론 2회)을 사용하는 내용으로 보조금 경비의 배분 계획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경기도(●실)는 보조사업자인 ●●으로 하여금 ㄴ 사업 보조금으로 경기도 역점사업인 제2판교테크노밸리를 홍보하는 ‘기업을 품은 도시, 주식회사가 되다’ 등 도정홍보 기획기사를 5회⁶⁷⁾에 걸쳐 연재하도록 하는가 하면, 경기도의 10대 추진과제인 ‘따복공동체’⁶⁸⁾ 사업의 광고⁶⁹⁾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66)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수도권 규제 피해실태 조사 30백만 원, 조사 데이터 분류 및 분석 20백만 원, 조사보고서 출판 35백만 원, CD 제작 5백만 원을 합산한 금액임

67) ●●이 8월호부터 12월호까지 게재한 기획기사는 경기도 역점사업인 제2판교테크노밸리와 도지사를 홍보하는 ‘기업을 품은 도시, 주식회사가 되다’, 경기도의 노사정협의회 성과를 홍보하는 ‘지자체가 차린 상생의 만찬에 노사가 마주 앉다’, 도지사 10대 추진과제이자 경기도형 마을공동체인 따복공동체의 성공사례를 홍보하는 ‘사회적 경제의 싹을 틔우고 따뜻한 기업이 흐른다’, 드레스덴의 산·학·관의 상생 협력사례를 소개하는 ‘문화가 있는 도시에 기업과 인재 몰린다’ 등으로 수도권 규제와 관련이 없음

68)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의 줄임말로써 2014년도 지방선거에서 도지사가 공약하여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단과 경기도가 설립한 따복공동체지원센터가 추진함. 한편 따복공동체는 이웃 간 소통, 연대, 나눔을 통해 신뢰를 쌓고, 육아, 교육,

이에 따라 ●●은 보조사업의 주된 목적과 내용인 수도권 규제에 따른 피해실태는 조사하지도 않은 채 2015. 9. 4.과 같은 해 11. 12. ◇◇ 주식회사에 보조금 계 130백만 원을, 2015. 12. 21.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보조금 20백만 원을 지급하여 지방보조금 150백만 원 전액을 경기도의 도정을 홍보⁷⁰⁾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또한 경기도(▲실)는 2016. 2. 17. ●●이 당초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관계없이 도정 홍보를 위한 기획기사와 광고를 게재하는 데 보조금을 사용한 것으로 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류를 제출하였는데도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여 그대로 정산완료 처리하였다.

4. 관련자의 부당한 업무처리

가. AI의 경우

AI은 2014. 1. 13.부터 2015. 7. 14.까지 경기도 ○실 ●담당관으로 재직하면서 경기도 본청의 예산 편성과 보조사업 예산 편성 업무 등을 총괄하였다.

한편 AI은 “3항 가”와 관련하여 2015년 5월경 ㄸ 홍보책자 제작·발간을 위해 경기도 ● EE, 도지사 ◎장 AH과 상의하면서 경기도의 홍보비 예산으로는 ㄸ 홍보책자 발간 대금을 지급할 여유가 없다는 사실을 파악하였고, AH으로부터 ㄸ 홍보책자 발간에 필요한 대금 마련 방안을 검토하도록 요청받았다.

그런데 AI은 ●●으로 하여금 발간·배포 비용을 부담하게 하면 되겠다고 생각

일자리, 저출산, 청년, 노인, 주거환경 등을 공동해결하는 주민중심 네트워크로서 수도권 규제와 관련 없는 경기도 사업임
69) 경기도 ○실은 ●●의 Ⅱ장 K의 이메일로 ‘따북공동체’ 광고시안을 전달하여 4개 지방신문에 광고하도록 함

70) ●●의 □본부장 A 등에 따르면 ㄸ 사업은 경기도 정책 등을 홍보하기 위해 기획 기사를 게재한 사업으로서 경기도 ○실이 ○ 주식회사와 기획기사 게재금액을 협의하였고, ●●은 ○실이 정한 금액을 위 언론사에 지급하기만 했으며, 기사내용 및 광고시안 또한 ●●이 아닌 ○실이 정했다고 함

하고 2015년 5월경 당시 ●● ㄱ장이던 K에게 전화를 걸어 “경기도 ◎실과 ●실에
서 씨를 통한 도정 홍보계획이 있는데 홍보비를 ●● 예산에서 협조해 주었으면 좋
겠다”고 한 후 ●●의 □본부장 A를 사무실로 불러 “너희 총장하고 이야기를 다 했
으니 씨에 55백만 원을 집행해라”고 요구하였다.

그리고 그로부터 며칠 후(날짜 모름) ●● Ⅱ장 K이 ◎장 AH을 통해 “●●이
어려운데 경기도의 ㄴ 홍보비를 대신 지급하기 어렵다”고 하자, AI은 A를 사무실로
다시 불러 “2015년 메르스 사업비에서 해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집행해라. 감사도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서 보조사업비에서 자금을 마련하여 ◎◎에 주라고 재차 요
구하였다.

이에 따라 ●● Ⅱ장 K과 □본부장 A는 ●담당관 AI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경기도로부터 지원받은 보조사업비에서 자금을 마련하여 ◎◎에 지급하기로 하고는 “3항 가”와 같이 주식회사 ◎◎에 55백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다.

나. AH 등의 경우

AH “3 가” 2015 5 AI ‘리브’
의 별책부록 제작·발간을 위해 경기도가 주식회사 ●●에 지급할 대금을 ●●에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추진한다는 것을 보고받고도 예산 관련 법규에 맞게 추진하도록 하지 않은 채 AI이 ●●을 통해 진행하는 대로 그대로 두었다.⁷¹⁾

그리고 경기도 ●실 ■팀 AJ은 “3항 나”와 관련하여 2015. 11. 25. ●●의 명의

71) AH은 AI으로부터 ●●으로 하여금 대금을 대신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보고를 받긴 하였으나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하여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나, AI은 AH이 2015년 5월경 2차례에 걸쳐 ●●에 연락해서 진행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함

72)로 제작한 따복공동체 신문광고시안을 ●● 사장 K에게 이메일로 전달함으로써 ●●으로 하여금 경기도 사업인 따복공동체를 광고하게 하였다.

▲ ● AK AL 2016. 2. 17. ● ●

“3 ” ● ●

정산완료 처리하였다.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① 관련자 주장 및 판단 “3항 가”와 관련하여 당시 경기도 ●담당관 AI은 자신이 ●● 사장 K과 A에게 ㄹ 홍보책자 발간 대금을 대신 납부하도록 요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경기도정 홍보 협조 차원에서 대금을 대신 지급해 달라고 한 것일 뿐 보조사업에서 비자금을 마련하여 대금을 납부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① A는 AI이 ‘메르스 극복지원사업’으로 자금을 줄테니 그 사업에서 알아서 ㄹ 홍보책자 발간 대금을 마련하여 지급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경기도는 실제로 2015. 7. 24. “메르스 극복지원사업” 예산 400백만 원을 편성하고 ●●을 민간위탁사업자로 정하여 같은 해 10. 1.과 같은 해 11. 12. ●●에게 400백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 점, ② AI은 당시 경기도 예산담당과장으로 ●●이 대부분의 운영

72) AI은 K에게 ●●의 명의로 로고가 기재된 따복공동체 광고시안을 전달한 점을 볼 때, ●●이 임의로 경기도 사업인 따복공동체 광고를 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경기도가 ●●으로 하여금 따복공동체 광고를 게재하도록 한 사실을 알 수 있음

자금을 경기도의 보조사업비나 위탁사업비 등으로 조달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어 AI 스스로도 ●●이 정상적으로 55백만 원의 ㄷ 홍보책자 발간 대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판단할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K과 A 등은 AI이 ●●에 보조사업비로 ㄷ 홍보책자 발간 대금을 대납하도록 요구한 경위와 장소, 요구한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당시 ●● 보조사업 감독 업무를 담당하였던 전 경기도 ㄴ센터장 V도 2015년 5~6월경 A로부터 ‘경기도가 ㄷ 홍보책자 발간 대금을 ㄷ에 모두 지불하지 못해 빚이 있는데 이를 ●●에 떠넘긴다. 5~6천만 원을 우리한테 내라고 하는데 죽겠다’, ‘보조사업비에서 마련해서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춰볼 때 AI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관계기관 의견 및 판단 경기도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감사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관련 법령과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조치하고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지방보조사업비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3항 나”와 관련하여 경기도 ㉠실은 ●●의 요청으로 따복공동체 광고시안을 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에 보조금을 도정홍보 용도로 사용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의 보조사업 담당자였던 B, A는 경기도 ㉠실 관계자가 ㉢ 등 언론사와 도정홍보 기획기사 및 광고에 대하여 협의하고서 ●●으로 하여금 그 내용대로 계약하게 하였다고 진술한 점, ㉣ ●●은 실제로 보조사업과 관련 없는 경기도 도정홍보 기사 및 광고 게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서 보조금 전액을 언론사에

지급한 점, ㉔ 경기도 ○실 AJ이 ●● 명의로 만든 따복공동체 광고시안을 ●● Ⅱ장 K에게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경기도 관계자가 ●●으로 하여금 기획홍보 기사 등을 게재하도록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경기도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경기도지사는

- ① AI의 비위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해당하여 엄중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위 사람이 2016. 12. 31. 퇴직한 바 있어 그 비위내용을 통보하오니 재취업, 포상 등을 위한 인사자료로 활용하고, 인사혁신처에 통보하여 공직후보자 등의 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통보(인사자료)]
- ② 앞으로 보조금을 보조사업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홍보사업 등의 수단으로 부당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는 한편,
- ③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감 사 원

시 정 요 구

제 목 특별조정교부금 관련 사업 정산업무 처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평택시

조 치 기 관 평택시

내 용

1. 사건 개요

평택시는 2015. 7. 17. “2015 G-JOB EXPO IN 평택”(행사기간: 2015. 10. 16.~ 10. 17., 이하 “일자리 박람회”라 한다) 개최 목적으로 경기도에 400,000,000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여 같은 해 7. 31.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400,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입찰공고를 거쳐 같은 해 10. 1. ●● 주식회사(대표이사 AN, 이하 “●●”라 한다)와 일자리 박람회 행사대행 용역계약⁷³⁾을 맺었다.

한편 일자리 박람회는 사단법인 ●●(회장 X, 이하 “●●”이라 한다)⁷⁴⁾가 2015년 3월경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받아 개최하기로 경기도와 미리 협의한 후, 같은 해 7월경 평택시의 협조를 얻어 평택시가 행사를 주관⁷⁵⁾하는 것으로 하되 실제로는 ●

73) 계약금액 399,300,000원, 착수일 2015. 10. 1., 완수일 2015. 11. 9.

74) ●●은 1999. 1. 27. 경기도 경제단체 간의 친목 등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경기도는 조례 등을 통하여 ●●을 지원해 왔고, 2014. 5. 25.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 개정으로 경기도가 ●●의 일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은 2016. 12. 6. 해산함

75) ●●이 2015년 7월경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일자리 박람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평택시와 협의를 하였는데 평택시가 업무부담 등으로 거부하려 하자 ●● 대표 K은 ○의원 AO에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고, AO가 평택시 ●과장 AP 등을 만나 평택시와 ●●이 함께 일자리 박람회 사업을 추진하도록 설득하여 사업이 평택시주관으로 진행됨

●과 주식회사 ▲▲(대표이사 AQ, 이하 “▲▲”라 한다)⁷⁶⁾이 행사 준비와 사업비 집행 등을 주도하는 것으로 진행해 왔고, 2015. 10. 1. 평택시가 ●●와 일자리 박람회 행사대행 용역계약을 맺은 이후에도 실질적으로는 ●● 등이 사업비 집행 등을 주도해 왔다.⁷⁷⁾

2.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고 대가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2015. 7. 20. 행정자치부 예규 제23호) 제14장 제1절 1. 및 제2절 1.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 등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고, 평택시가 2015. 8. 20. 일자리 박람회 행사대행 입찰 시 공고한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사업비는 발주처인 평택시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시설물 설치, 문화행사, 방송제작비, 홍보, 행사운영 등)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용역대가를 지불하지 않거나 기 지급분을 반환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용역 완료 후 세금계산서, 입금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한 정산보고서를

76) ▲▲는 행사대행업체로서 2015년 3월경 ●●의 요청으로 일자리 박람회 행사대행업무를 수행하게 됨

77) ●●이 행사대행 용역계약의 입찰참가자격(전시 및 행사대행업을 주 업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이 없어 ●●를 계약상대자로 정하였고, 사업비 중 ●●가 직접 집행하기로 협의된 106백만 원(행사 방송비 70백만 원과 부가세 36백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293백만 원은 ●●과 ▲▲가 요구하면 ●●는 행사 관련 업체 등에 송금해주는 구조로 사업비를 집행함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2015 ● ● D K ● ●

용역계약을 맺기 전부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일자리 관련 사업을 진행하여 ▲▲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기로 계획⁷⁸⁾하고 ▲▲ 대표이사 AQ에게 비자금을 조성하고 관리하도록 하였다.

그 후 AQ은 2015년 11월경 ●●의 부장 AF의 요구에 따라 ●●로 하여금 자신이 미리 가장 용역계약을 맺을 업체로 물색한 ▲▲(대표자 AR)에 71,000,000원, ▼▼주식회사(대표이사 AS)에 21,600, 000원을 송금하도록 요구한 후, ▲▲로부터 과다 지급⁷⁹⁾하였던 44,400, 000원, ▼▼주식회사로부터 21,600,000원을 각각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계 56,672,516원⁸⁰⁾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관리하였다.

Φ AO

AT ● ● AQ 2015. 12. 9.

AU ▼▼(AV) 30,000,000

48,649,000

하였고, 남은 6,982,473원⁸¹⁾은 ●● 부장 AF이 AQ으로부터 K .

78) ●● 부장 AF 등은 2015년 3월경 경기도로부터 500,000,000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여 100,000,000원의 비자금을 조성하려고 계획하였으나 2015. 7. 31. 400,000,000원만 지원되면서 ●●과 ▲▲ 등이 협의하여 75,392,336원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함

79) ▲▲는 실내·외장치 설치업을 하고 있어 실제 행사에 필요한 부스를 설치한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비용을 ▲▲ 측으로 송금함

80) ▲▲, ●●, (주)○○○(대표이사 AW)는 사전에 ●●과 협의하여 비자금으로 75,392,336원을 조성한 후 ●●에 제공할 계획이었으나 행사대행 추가비용이 발생하여 18,719,820원이 추가로 지출되었고 최종적으로 56,672,516원의 비자금을 조성함

81) ●● 부장 AF이 작성한 문서에는 AQ이 조성된 비자금 중 8,023,516원을 ●●에 보내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으나, 실

그리고 일자리 박람회 행사대행 용역계약의 당사자인 ●●는 2015. 11. 17. 정산서류에 ▲▲가 제공한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행사대행 용역계약 대금 399,300,000원 전액을 정상 집행한 것으로 평택시에 용역 정산서류를 제출하였고, 평택시는 ●●가 행사대행 용역 대금을 전액 정상 집행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평택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감사원 감사결과 통보에 따라 위법사항이 있다면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평택시장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계약내용대로 사업비 전액을 정상집행한 것으로 정산보고한 ●● 주식회사로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5항 및 제안요청서의 계약조건에 따라 56,672,510원을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제 AQ은 ●●에 6,982,473원만 송금한 것으로 확인됨

감 사 원

통보(인사자료)

제 목 직원 채용업무 부당 개입

소 관 기 관 한국가스안전공사

조 치 기 관 산업통상자원부

내 용

1. 사건 개요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2015. 2. 12.과 2016. 7. 1. 인력충원을 위해 신입·경력직원 계 144명(2015년 65명, 2016년 79명)을 서류·필기·면접전형⁸²⁾ 등 3단계 전형을 거쳐 채용하였다.

공사 「인사관리요령」 제7조 제4호에 따르면 합격자는 최종전형 순위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장이 결정한다고 되어 있고⁸³⁾, 2015년 및 2016년 채용과 관련하여 공사 인사위원회는 합격자를 면접점수 고득점 순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사장에게 추천하여 사장이 최종 확정하는 것으로 각각 의결하였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결과 공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전에 면접점수 순위를 임의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당초 면접점수 순위가 낮아 인사위원회가 고득점 순으로 심의할 때 채용인원의 1배수 내에 들지 않은 13명(2015년 4명, 2016년 9명)을 최종 합격시

82) 전형별 점수 합산 없이 전형별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식

83) 후술하는 바와 같이 공사는 2016. 4. 18. 산업통상자원부의 감사를 계기로 인사관리요령 제7조 제4호의 규정을 위와 같이 개정하여 2016년도 채용부터 적용함

킨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원인을 조사한 결과 공사 사장의 부당한 채용업무 개입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공사 사장의 채용업무 부당 개입

사장 AX은 2014. 12. 8.부터 2017. 6. 7. 현재까지 위 직위에서 직원 채용 등 공사의 인사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제3조 및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임원 및 소속직원의 선임·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운영 전반을 법령 및 정관·자체규정과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소속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해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지 않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공사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가. 2015년 상반기 신입·경력직원 채용업무 부당 개입

공사 인사위원회는 2014. 12. 18. 직원 채용 등 인사운영의 기본방침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 「인사규정」 제8조에 따라 2015년도 신입·경력직원 채용계획을 심의하면서 합격자는 면접점수 고득점 순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사장에게 추천하여 사장이 최종 확정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그런 후 공사는 2015. 1. 26.부터 다음 날인 1. 27.까지 필기전형 합격자를 대상

으로 면접전형을 실시하였고, 채용담당자인 ☎부 차장 AY은 면접전형이 종료된 후 엑셀(Microsoft Excel) 프로그램으로 면접점수를 집계하여 면접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정리한 면접전형 결과를 ☎부장 AZ에게 보고하였다.

그리고 AZ은 합격자를 심의하기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날짜 모름) ☎처장 BA과 함께 사장 AX의 사무실에서 “면접전형 집계결과입니다”라고 하면서 AY이 정리한 면접전형 결과 자료를 AX에게 보고하였다.

그런데 사장 AX은 “현장에 적합한 인재를 뽑기 위한 거다”라며⁸⁴⁾ 면접전형 결과를 보고한 자료의 특정 응시자의 이름에 화살표 표시를 하면서 [표]와 같이 5급 신입 화공(충북권) 분야 BB 등 6명의 면접점수 순위를 임의로 변경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AZ은 AY에게 AX이 화살표로 표시한 서류를 돌려주며 “순위가 바뀌었으니 맞춰서 절차를 진행해라”라고 하면서 AX의 지시대로 면접점수 순위를 변경하도록 지시하였고, AY은 AX의 지시대로 변경된 면접점수 순위에 맞춰 엑셀 프로그램에서 면접점수를 수정한 후 당초 면접위원⁸⁵⁾이 작성하였던 면접평가표에 수정된 점수를 기재한 다음 ☎부장 BC 등 면접위원들에게 부탁하여 면접평가표를 다시 작성하게 하고는 당초 면접평가표를 파기하였다.

84) AY은 AZ로부터 면접점수를 수정하게 된 사유에 대해 “조직의 방침으로 현장에 적합한 인재를 뽑기 위한 거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AZ은 당시 사장 AX으로부터 무슨 말을 들었는지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지만 자신이 AY에게 그런 말을 했다면 아마도 AX이 자신에게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AY에게 전달하였을 것이라고 답변함

85) 공사는 면접전형을 1차와 2차로 나누어 실시하였는데 1차 면접위원은 부장급 직원들로 구성하였고, 2차 면접위원은 이사급인 임원들로 구성하였음. 2015년과 2016년 모두 사장의 면접점수 순위 변경지시로 1차 면접점수만 수정하였는데 이에 대해 2016년 채용담당자 BD은 2차 면접위원들은 이사급인 임원들이라 아무래도 부장들보다는 면접평가표 수정을 부탁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진술함

그리고 AY은 2015. 1. 28. AX의 지시에 따라 변경된 면접점수 순위대로 “2015년 신입 및 경력직원 최종합격자 선정 심의(안)”을 작성하여 AX의 결재를 받아 인사위원회에 상정하였고, AX은 같은 날 인사위원회가 자신의 지시대로 면접순위가 변경된 안건을 심의하여 추천하자 이를 그대로 확정하였다.

그 결과 당초 면접점수 순위라면 인사위원회가 고득점 순으로 심의할 때 채용인원의 1배수 내에 들지 않았던 BB 등 4명이 최종 합격하게 되었다.

[표] 2015년도 응시자 면접점수 순위 변경 결과

(단위: 점)

연번	분야	응시자	변경된 면접점수				변경 후 면접순위 (최종합격 여부)
			면접위원 1 ¹⁾	면접위원 2	면접위원 3	평균	
1	5급 신입 화공 (충북권)	BB	8	8	8	8	1 (합격)
2		BE	6	6	7	6.33	3 (불합격)
3	7급 신입 기술 (수도권)	BF	9	10	9	9.33	5 (합격)
4		BG	4	5	4	4.33	11 (불합격)
5	7급 신입 기술 ²⁾ (경남권-부산)	BH	9	10	9	9.33	1 (합격)
6	7급 신입 기술 (강원권-강릉)	BI	9	10	9	9.33	1 (합격)

주: 1. 5급 신입 화공(충북권) 분야면접위원 1,2,3은 차례대로 ㉠부장BC, ㉡부장BI, ㉢부장BK이고, 7급 신입기술 분야면접위원 1,2,3은 차례대로 ㉣부장BL, ㉤부장BM, ㉥센터장BN임

2. 7급신입기술(경남권-부산, 강원권-강릉)분야합격자BH,BI대신불합격된 자는 당초 면접점수 집계자료가없어 확인이불가함

자료: AY 문답서, 2015년도 면접전형 결과집계 자료 등을 토대로 재구성

나. 2016년 상반기 신입·경력직원 채용업무 부당 개입

공사 인사위원회는 2016. 3. 8. 2016년도 신입·경력직원 채용계획을 심의하면서 합격자는 면접점수 고득점 순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사장에게 추천하여 사

장이 최종 확정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한편 공사는 2016. 3. 15. 산업통상자원부가 실시한 “공공기관 인사채용 실태 감사” 결과 2015년 신입·경력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사장 AX이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예비후보자 중 5명의 순위를 합리적인 기준 없이 임의로 변경⁸⁶⁾하여 최종 합격시켰다는 사유로 기관장 경고, 기관 경고, 개선요구 처분을 받아 같은 해 4. 18. 「인사관리요령」 제7조 제4호의 규정을 “최종합격자는 순위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장이 결정한다.”라고 개정하였다.⁸⁷⁾

그런 후 공사는 2016. 5. 2.부터 같은 해 5. 4.까지 필기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전형을 실시하였고, 채용담당자인 ㉠부 과장 BD은 면접전형이 종료된 후 엑셀 프로그램에 면접점수를 집계하여 면접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정리한 면접전형 결과를 ㉠부장 BO에게 보고하였다.

그리고 BO는 합격자를 심의하기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 전인 2016. 5. 9.경 ㉠처장인 BP과 함께 사장 AX의 사무실에 들어가 AX에게 “면접전형 집계결과입니다”라고 말하며 BD이 정리한 면접전형 결과 자료를 보고하였다.

그런데 사장 AX은 또다시 “인사정책상 일부 인원의 조정검토가 필요하다”며 면접전형 결과를 보고한 자료의 응시단 명단 왼쪽에 합격시킬 사람은 “○”, 탈락시킬

“X” [] “2016

과” 5 () BS 18

86)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채용후보자 등 예비후보자의 순위를 최종 사장 확정 단계에서 출신학교 중복, 해당 분야 업무의 여성 부적합 등의 불합리한 사유를 들어 5명의 예비후보자 순위를 임의로 조정함

87) 2016. 4. 18. 개정되기 전에는 “순위에 따라”라는 문구 없이 최종합격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장이 결정한다고 규정됨

로 변경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BO는 BD에게 AX이 ○, X 표시한 서류를 돌려주면서 “여기에 맞게 수정하라”며 AX의 지시대로 면접점수 순위를 변경하도록 지시하였고, BD은 AX의 지시대로 변경된 면접점수 순위에 맞춰 엑셀 프로그램에서 면접점수를 수정한 후 당초 면접위원이 작성하였던 면접평가표에 수정된 점수를 기재한 다음 ㉠처장 BQ 등 면접위원들에게 부탁하여 면접평가표를 다시 작성하게 하고는 당초 면접평가표를 파기하였다.

그리고 BD은 AX의 지시대로 면접점수 순위가 변경된 면접전형 결과를 인사위원회 담당인 ㉡부 차장 BR에게 전달하였고, BR은 2016. 5. 17. BD으로부터 전달받은 대로 “2016년 신입·경력사원 최종합격자 심의(안)”을 작성하여 AX의 결재를 받아 인사위원회에 상정하였다.

그리고 나서 AX은 2016. 5. 18. 인사위원회가 자신의 지시대로 변경된 합격자 선정(안)을 심의하여 추천하자 이를 그대로 확정하였다.

그 결과 당초 면접점수 순이라면 인사위원회가 고득점 순으로 심의할 때 채용인원의 1배수 내에 들지 않았던 BS 등 9명이 최종 합격하게 되었다.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① **관련자 주장 및 판단** 사장 AX은 일부 응시자의 면접점수 순위를 변경하여 합격시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 2015년도 채용의 경우 합격자 선정(안)을 심의하기

위한 인사위원회가 면접점수 고득점 순으로 채용인원의 2배수를 사장에게 추천하여 사장이 최종 결정하도록 의결하였기 때문에 BB 등 4명은 면접점수 순위를 변경하지 않았어도 합격할 수 있었고, ㉠ 자신이 면접점수 순위 변경을 일방적으로 지시한 것이 아니라 공사의 업무 특수성⁸⁸⁾을 감안하여 ㉠부장·처장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였으며, ㉠ 면접위원들이 동의한 경우에만 면접점수를 수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면접평가는 면접위원의 고유한 업무로서 사장이라 하더라도 면접전형에 임의로 개입하거나 전형결과를 변경할 수 없고, 면접점수 고득점 순위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사장에게 추천하기 전까지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에도 개입할 수 없는 점, ㉠ 사장이 채용인원의 2배수 중에서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하더라도 관계 규정 등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인사위원회의 심의 전에 사실상 합격자를 미리 확정된 후 이를 감추기 위해 면접위원들이 평가한 응시자의 면접점수와 순위를 임의로 변경하고, 그에 맞춰 면접평가표를 재작성한 후 당초 면접평가표를 파기한 것을 정당화 할 수는 없는 점, ㉠ 이 건 관련자 AZ과 BO, BP 등은 사장의 합격자 변경 지시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였지만 사장의 지시를 거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려웠다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볼 때 AX이 일방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 2016년 채용의 경우 AX이 문답조사에는 현장업무는 여성이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배제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답변서에는 직무경력자를 우대하여 선발한 것이라고 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점, ㉠ AX이 주장하는 합격자 변경사유(현장업무에

88) AX은 문답조사시 2015년의 경우 군필 여부 및 근무지와 거주지 인접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 순위를 조정하였고, 2016년의 경우에는 현장업무의 경우 여성이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배제하였으며, 이외에도 근무지와 거주지 인접, 전공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 순위를 조정하였다고 답변함

여성 부적합 등)를 충족하는 선순위 응시자가 있는데도 후순위 응시자를 합격자로 결정한 점,⁸⁹⁾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아 사장이 임의로 합격자 순위를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 공사의 부장급인 면접 위원들도 ㉮부로부터 인사정책상 필요하다⁹⁰⁾는 사유로 면접평가표 수정을 요구받으면 조직 구성원으로서 현실적으로 이를 거절하기 어려운 점⁹¹⁾ 등을 고려할 때 AX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관계기관 의견 산업통상자원부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감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AX의 비위행위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에 위배되므로 그 내용을 인사자료로 통보하오니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하시기 바랍니다.[통보(인사자료)]

89) 일례로 AX은 문답조사에서 5급 신입 검사점검(보훈) 분야(채용인원: 2명) 응시자 중 당초 면접점수 순위 2위로 합격이었던 BT를 여성이기 때문에 현장업무를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합격시켰고 대신 남성인 5위 BU을 합격시켰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초 면접점수가 3위였던 BV도 남성이었는데 왜 3위 대신 5위를 합격시켜는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함. 이와 유사한 다른 사례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일관함

90) BD은 면접위원들을 찾아가 인사정책상 면접점수 수정이 필요하다며 면접평가표 수정을 부탁하였고, 이에 대해 면접위원들이 크게 반대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함.

91) 2016년 5급 신입 검사점검(전국, 보훈), 5급 경력 검사점검(목포/여수) 분야 면접위원이었던 ㉮처장 BQ(현 ㉮본부장)은 면접평가 종료 이후 이미 평가한 면접점수를 수정한 사유에 대해 ㉮부가 협조를 요구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함

[별표]

2016년 상반기 채용 응시자 면접점수 순위 변경 결과

(단위: 점)

연번	분야	응시자	당초 1차 면접점수					변경된 1차 면접점수					당초 순위 (합격 여부)	변경된 순위 (합격 여부)
			면접 위원 1 ¹⁾	면접 위원 2	면접 위원 3	면접 위원 4	평균	면접 위원 1	면접 위원 2	면접 위원 3	면접 위원 4	평균		
1	5급 신입 검사점검 (전국) ²⁾	BS	55	70	60	60	61.3	55	70	80	80	71.3	17 (불합격)	11 (합격)
2		-	80	90	95	85	87.5	95	90	100	95	95.0	18 (불합격)	12 (합격)
3		-	90	90	100	90	92.5	90	70	65	60	71.3	4 (합격)	16 (불합격)
4		-	85	85	100	85	88.8	85	85	75	75	80.0	11 (합격)	17 (불합격)
5	5급 신입 검사점검 (보훈)	BT	95	90	100	95	95.0	95	90	85	85	88.8	2 (합격)	4 (불합격)
6		BU	60	65	60	55	60.0	60	85	85	80	77.5	5 (불합격)	2 (합격)
7	5급 경력 검사점검 (목포/여수)	-	90	90	100	90	92.5	90	90	75	80	83.8	2 (합격)	4 (불합격)
8		-	60	70	60	65	63.8	60	70	90	80	75.0	4 (불합격)	2 (합격)
9	5급 신입 검사점검 (영월)	-	85	95	95	90	91.3	75	95	70	60	75	3 (합격)	5 (불합격)
10		-	75	70	85	60	72.5	75	70	85	90	80.0	5 (불합격)	3 (합격)
11	5급 신입 검사점검 (포항/안동)	-	90	90	90	75	86.3	40	50	40	40	42.5	2 (합격)	8 (불합격)
12		-	65	60	55	70	62.5	65	60	65	70	65.0	5 (불합격)	3 (합격)
13	5급 경력 검사점검 (충청권)	-	85	90	90	85	87.5	85	80	75	85	81.3	1 (합격)	4 (불합격)
14		-	40	60	75	75	62.5	75	85	75	75	77.5	5 (불합격)	3 (합격)
15	5급 신입 검사점검 (지역인재-충청권)	-	80	90	95	95	90.0	80	70	70	80	75.0	4 (합격)	12 (불합격)
16		-	70	50	95	70	71.3	70	90	95	85	85.0	10 (불합격)	5 (합격)
17	7급 신입 기술실무 (포항/안동)	-	90	95	90	-	91.7	90	80	80	-	83.3	1 (합격)	2 (불합격)
18		-	90	80	80	-	83.3	90	95	95	-	93.3	2 (불합격)	1 (합격)

주: 1. 5급 신입 검사점검(전국, 보훈), 5급 경력 검사점검(목포/여수) 분야 면접위원 1, 2, 3, 4는 차례대로 ●처장 BQ, ■부장 BW, ♀기준부장 CA, ♂부장 CB임

5급 신입 검사점검(영월, 포항/안동) 분야 면접위원 1, 2, 3, 4는 차례대로 -부장 -, -단장 -, ♀부장 -, ■기준부장 -임

5급 경력 검사점검(충청권) 분야 면접위원 1, 2, 3, 4는 차례대로 -처장 -, -부장 -, ■부장 -, -부장 -임

5급 신입 검사점검(지역인재-충청권) 분야 면접위원 1, 2, 3, 4는 차례대로 -처장 -, -부장 -, ♀부장 -, -기준부장 -임

7급 신입 기술실무(포항/안동) 분야 면접위원 1, 2, 3은 차례대로 ■부장 -, ♀부장 -, -부장 -임

2. 합격자 2명(-, -)이 등록을 포기함에 따라 -, -는 추가로 합격함

자료: BD 문답서, 2016년도 면접전형 결과요약 자료 등을 토대로 재구성

감 사 원

징계·주의요구

제 목 과장급 보직인사 및 진안군의료원 직원 채용업무 부당 처리

소 관 기 관 ① 진안군 ② 진안군의료원

조 치 기 관 ① 행정안전부 ② 진안군 ③ 진안군의료원

내 용

1. 사건 개요

가. 과장급 보직인사 부적정

진안군은 2016. 1. 19. J 과장으로 근무하던 CC를 보건소장으로, 보건소장으로 근무하다 진안군의료원장으로 파견⁹²⁾(기간: 2015. 11. 1. ~ 2016. 1. 18.) 중이던 CD을 Ŏ면장으로 전보 발령하는 등 2016년도 상반기 보직인사를 하였다.

「지역보건법」 제10조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보건소장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으로 임용하여야 하고,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이하 “보건의료”라 한다) 직렬의 사무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구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7. 1. 3. 전라북도 진안군 규칙 제1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에 따르면 Ŏ면장은 행정·농업·시설·사회복지

92) 파견기간 동안 보건소 보건행정담당(CE)이 보건소장 직무를 대리함

직렬의 사무관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보건소장은 지역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는 보건소 기능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임용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진안군은 2016. 1. 19. CC를 보건소장으로, CD을 0면장으로 각각 발령하는 보직인사를 하였다.⁹³⁾

이와 같이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등에서 정한 임용요건에 위배되게 과장급 보직인사를 하였다.

나. 진안군의료원 직원 채용업무 부당 처리

진안군의료원(2014년 4월 설립)은 2014. 11. 7.부터 같은 해 11. 16.까지 사무직, 간호직, 의료기술직 등 직종별 경력 및 신입 직원 채용공고를 한 후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2014. 11. 26. 면접시험 평가점수(면접위원 3명의 합산점수, 300점 만점)가 높은 순으로 CF 등 40명을 합격자로 결정하였으며, 합격자에 대한 신원조회(임용결격자 확인)를 거쳐 2014. 12. 22.부터 2015. 4. 1. 사이 총 38명⁹⁴⁾을 채용하였다.

「진안군의료원 인사규정」 제13조 제1항 [별표 2] “임용기준 및 방법”에 따르면 일반직 4급 임용기준은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5급 상당 이상의 직에 근무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 본원 직원채용고시 및 전형에

93) 한편 진안군은 2016. 12. 27. 승진자로 내정(2017. 3. 10. 정규 승진임용)된 CG(전 보건소 예방의학담당)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면 잘못된 보건소장 보직인사가 치유될 수 있었으나 2017. 1. 5. CG을 동향면장 직무대리로 보하였음

94) 간호사 8급 CH, CI 및 사무직 8급 CJ 등 합격자 3명은 개인사정으로 임용을 포기하였고, 사무직 8급의 경우 차점자 CK을 임용함

합격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로 되어 있고, 5급 내지 9급 임용기준은 “본원 직원채용고시 및 전형에 합격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 면허자격증 및 국가기술자격 면허소지자로서 본원 전형에 합격한 자”로 되어 있다.

따라서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임용대상 직급별 임용기준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동등 이상의 자격’의 구체적 기준을 정하여 전형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진안군의료원은 신규 채용할 경력 사무직(4~8급)에 대한 응시자격을 정하면서 「진안군의료원 인사규정」에서 정한 임용기준을 반영하거나 직급별 임용기준상 ‘동등 이상의 자격’에 관한 기준도 정하지 아니한 채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단, 법인기업 의약품, 행정, 식품·식당, 의료원, 병원, 종합병원 업무 경력자 우대)”이면 응시자 누구나 서류전형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아무런 근거도 없이 “진안군 거주자나 진안군에 주소를 둔 자를 채용 결정 시 우대하겠다”고 정하여 2014. 11. 7. 채용공고를 하였다.

그리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등을 거쳐 2014. 11. 26. 4급 CF 등 40명을 합격자로 결정하였다.

이와 같이 「진안군의료원 인사규정」에서 정한 직급별 임용기준을 응시자격에 반영하지 않은 채 서류·면접 전형 등을 함에 따라 위 임용기준에 따른 자격이 없는 자도 응시하여 합격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제 공무원 5급 이상 직이나 이와 상응하는 병원 근무경력이 없어 「진안군의

」 CF(CL) 4 (■)

으로 임용되었고, 각 직급별 응시자 중 병원 근무 경력자가 다수⁹⁵⁾ 있었지만 경력 사무직(5~8급)으로 임용된 6명 중 5명(사무6급 CM 제외)은 병원 근무경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⁹⁶⁾

2. 관련자의 부당한 업무처리

가. 군수의 부당한 업무지시

진안군수 CL는 2014. 7. 1.부터 2017년 5월 현재까지 위 직위에서 직원 보직인사 등 진안군의 인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면서 “1항 가”와 관련하여 2016년 상반기 인사발령(2016. 1. 19.) 일주일 전 즈음 진안군의료원장으로 파견 중이던 CD이 2018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생각으로 자신의 고향인 ○면장의 직위로 발령받아 지역 주민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2017년 6월 말에 명예퇴직한 후 2018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진안군의회 의원으로 출마할 예정인데, 준비를 해야 하니 고향인 ○면장으로 보내 달라”고 부탁하자, CL는 CD이 지방선거를 준비하는데 유리하도록 ○면장으로 발령해 주기 위해 b과 인사업무 실무자 CS로 하여금 CD을 ○면장으로, CC를 보건소장으로 각각 보임하는 것이 관계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였다.

이후 CL는 CS로부터 “보건소장에 보건의료 직렬이 아닌 행정사무관을 임용하

95) 4급 ■부 직 응시자 4명 중 3명이, 5급 ■팀장직 응시자 7명 중 5명이, 5급 ■팀장직 응시자 9명 중 6명이, 7급 원 응시자 10명 중 6명이, 7급 관리직 응시자 9명 중 4명이, 8급 응시자 12명 중 4명이 병원 근무 경력자임

96) 사무직(4~9급)으로 채용된 8명 모두 주소지가 진안군임[사무4급(1명) ■부장 CF, 사무5급(2명) ■팀장 CN, ■CO, 사무6급(1명) CM, 사무7급(2명) CP, CQ, 사무8급(1명) CK, 사무9급(1명) CR]

면 지방보건법령에 위배되므로 추후 문제가 된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러나 CL는 CD를 〇면장으로 발령할 경우 보건소장에 보임할 사람이 없어⁹⁷⁾ 지역보건법령에 위배되는 보직인사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을 알면서도 CD이 선거를 준비할 수 있도록 〇면장으로 발령해 주기 위해 2016. 1. 19. 부군수 CT, b과 과장 CU, 팀장 CV, 실무자 CS를 집무실로 불러 상의한 다음 CC를 보건소장으로, CD를 〇면장⁹⁸⁾으로 각각 발령하도록 지시하였고, 같은 날 CC와 CD은 CL가 지시한 대로 각각 인사발령되었다.

또한 CL는 “1항 나”와 관련하여 진안군의료원 직원 채용공고 전후 수시로 부서장회의에서 지시하거나 진안군의료원장 CW(2015. 10. 31. 퇴직)을 통해 진안군의료원 직원 채용 시 진안사람이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하라는 방침을 주었고, 진안군의료원에 2014. 10. 15. 파견되어 직원 채용업무를 주관한 CX은 CW으로부터 군수 CL의 방침을 전해들은 후 신규 채용할 직원의 응시자격에 「진안군의료원 인사규정」의 직급별 임용기준을 반영하지 않고 누구나 응시만 하면 서류전형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응시자격을 정하였다.

그리고 CL는 면접 전(날짜 모름) CW에게 면접위원 3명 중 외부위원 2명을 군에서 직접 추천하겠다고 요구함으로써 CX이 군에 우호적인 면접위원 2명을 선임⁹⁹⁾하는 등 업무를 처리하게 하였다.

97) 보건소장에 보임할 수 있는 진안군 소속 공무원은 CD 밖에 없었을 뿐 아니라 CL는 보건소장 임용을 위해 의사를 채용할 생각도 없었다고 진술함

98) 이후 2017. 1. 3. 보건사무관도 〇면장으로 보할 수 있도록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

99) 의료원장 CW은 외부 면접위원 선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CX이 선정한 외부위원에 대해 보고를 받고 관련문서에 결재만 하였음

나. 채용업무 담당자 CX의 부당한 업무처리

진안군 *실 CX은 2014. 10. 15.부터 2015. 2. 12.까지 진안군의료원에 파견 근무하면서 진안군의료원 직원 채용과 관련된 서류전형 심사 등 채용업무를 주관하였다.

「진안군 공무원 행동강령」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CX은 2014. 11. 6. 신규채용할 경력 사무직(4~8급)에 대한 응시자격을 정하면서 진안사람을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군수의 방침이 있다는 이유로 “1항 나”의 내용과 같이 「진안군의료원 인사규정」에서 정한 임용기준을 반영하거나 직급별 임용기준상 ‘동등 이상의 자격’에 관한 기준도 정하지 아니한 채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단, 법인기업 의약품, 행정, 식품·식당, 의료원, 병원, 종합병원 업무 경력자 우대)”이면 응시자 누구나 서류전형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진안군 거주자나 진안군에 주소를 둔 자를 채용 결정 시 우대하는 내용으로 “진안군의료원 직원 채용 공고” 문서를 작성하여 진안군의료원장 CW의 결재를 받은 후¹⁰⁰⁾ 같은 해 11. 7. 채용공고를 하였다.

그리고 CX은 사무직 면접심사를 담당할 면접위원 3명(진안군의료원 *과 과장 CY, 외부 2명) 중 외부 면접위원 2명을 의사나 병원 근무경력이 풍부한 전문가 대신 자

100) 당시 직원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관리부에는 CX만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CX이 작성한 채용 공고 문서를 검토할 상급자는 결재권자인 CW 밖에 없었음

신의 지인 CZ(진안군 @회장, 전 진안군 공무원)과 진안군보건소 보건행정담당 CE이 추천한 DA(2014. 6. 4. 지방선거 당시 군수 선거캠프에서 활동)으로 선임한 후, 2014. 11. 25. 면접심사 시 DA과 CZ에게 “진안사람”을 우선 채용해 달라고 부탁함으로써 응시자의 병원 근무경력, 전문성 등을 토대로 공정하게 평가하도록 하기보다는 지인 등을 위주로 선발되게 평가하도록 유도하였다.

이에 외부 면접위원들은 자신들의 지인이나 진안사람에게 높은 점수를 준 반면 병원 근무경력으로 전문성을 갖춘 응시자에게 오히려 낮은 점수를 주어¹⁰¹⁾ 사실상 외부 면접위원들이 합격자를 결정하게 됨으로써 “1항나”와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실제로 외부 면접위원 DA은 “사무4급(■ 장)에 응시한 CF(군수 CL의 조카이자 군수 선거캠프에서 사무장 겸 회계책임자로 활동)은 2014. 6. 4. 지방선거에서 군수 선거캠프에서 고생한 사람이라서 높은 점수를 주었고, 사무5급(■팀장)에 응시한 CN은 진안군 공무원 출신이라 군과 소통이 잘 될 것으로 보아 높은 점수를 주었다”고 하고, 또 다른 외부 면접위원 CZ은 “CF은 군수 조카라서, CN은 진안군에서 공무원으로 같이 근무하였던 후배라서, 사무5급(♫팀장)으로 응시한 CO은 그 집안을 잘 알고 오래 전부터 알고 있던 관계라서 높은 점수를 주었다”고 하는 등 면접위원이 응시자의 학력(병원 관련 학과)이나 병원 근무경력 등을 통한 전문성이나 능력 외의 사항을 위주로 심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01) 예컨대 4급 ■ 장직에 응시한 DB(주소지: 전주시)은 예수병원(전주시 소재 종합병원)에서 관리자(응시 당시 병원 △부장)로 근무한 경력이 10년 이상으로 병원행정사 등 관련분야 자격증 3개를 보유하고었는데 내부 면접위원인 CY이 응시자 중 최고점수인 93점을 부여한 데 비해 외부 면접위원인 DA과 CZ은 공히 75점으로 낮게 평가하였고, 같은 직급에 응시한 군수 조카 CF(병원 근무경력 없음)에 대하여 CY은 응시자 중 최저점수인 83점을 부여하였으나 외부 면접위원인 DA과 CZ은 각각 최고점수인 95점과 97점을 부여함

이 외에도 CX은 간호조무8급에 응시한 DC가 간호조무9급으로 변경 응시하였는데도 최초 응시한 간호조무8급으로 서류전형을 진행하였을 뿐 아니라 DC가 간호조무8급 응시자격(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의료원, 병원, 종합병원에서 근무한 경력자)을 충족하였는데도 서류심사합격자 명단에서 누락함으로써 DC는 면접기회를 부여받지 못하게 되었다.

관계기관 및 관련자 의견 진안군수 CL는 “1항 가”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위배되게 보직인사를 한 잘못을 인정하면서 조속히 개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1항 나”와 관련하여 군수로서 전문직이 아니라면 진안사람이 많이 채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다면서 직원 채용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앞으로 지도·감독을 잘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1항 나”와 관련하여 CX은 자신이 의료원 직원 채용업무를 잘못 수행하여 의료원 직원 임용기준을 충족하지 않거나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임용된 것에 책임을 느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징계요구 양정 진안군의료원 직원 채용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CX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행정안전부장관은 보건소장 등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보직인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고 진안군의료원 직원 채용에 부당 개입한 진안군수 CL에 대해 엄중하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진안군수는 진안군의료원 직원 채용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CX을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징계처분(경징계 이상)하시기 바랍니다.(징계)

진안군의료원장은 앞으로 자체 인사규정 등 관계규정에서 정한 기준과 달리 임의로 직원을 채용하는 일이 없도록 인사 관련 업무를 철저히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감 사 원

문책·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용역계약 준공 및 감사업무 부담 처리
소 관 기 관 코레일네트웍스주식회사
조 치 기 관 ①코레일네트웍스주식회사 ②한국철도공사
내 용

1. 사건 개요

코레일네트웍스주식회사(이하 “코레일네트웍스”라 한다)는 2015. 6. 29. **주식회사(대표이사 DD, 이하 “**”이라 한다)와 “무인화 주차시스템 1단계 구축사업 용역계약”(계약금액: 1,710,104,000원, 사업기간: 2015. 7. 1. ~ 12. 27., 이하 “용역”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주차장 무인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가. 관련법령 및 용역계약 이행 상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¹⁰²⁾ 제2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 따르면 지체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수행할 가

102) 코레일네트웍스 「계약업무처리지침」 제2조에 물품구매 및 공사·용역에 관한 업무의 처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계약사무 운영 규정」 등을 따르도록 규정

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면 계약보증금을 국고(코레일네트웍스)에 귀속시키고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되,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게 하고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용역의 제안요청서와 ※※이 제출한 용역제안서(Ⅱ-1.3)에 따르면 위 용역의 과업범위는 통합주차관리를 위한 주차관제시스템 구축, 표준화된 주차장운영 시스템 구축, 수입금심사 및 정산관리 등을 위한 관리자시스템 구축 등 응용프로그램 개발과 서버·네트워크 환경구축, 주차장 무인화 운영을 위한 주차설비 도입(11개소) 등 인프라환경을 구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계약 후 5개월 내에 응용프로그램 개발과 인프라환경 구축 등을 완료한 후 1개월간의 교육 및 시운전을 거쳐 착수일로부터 180일 내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코레일네트웍스(α처)는 2015. 12. 28. ※※로부터 용역 준공검사를 요청 받고 같은 해 12. 28.부터 2016. 1. 10.까지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검수대상 235개 요구사항 중 응용프로그램 등 136개 항목에 대해 “부적합 또는 검수진행 불가” 판정을 내린 후, 2016. 1. 12. ※※에 “준공불가” 통지와 함께 사업완료 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데 대해 지체상금(0.25%, 1일 4,275,260원)을 부과하는 한편, 2016. 2. 25.까지 계약을 이행하도록 하면서 계약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그 후 ※※은 2016. 2. 25.까지도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자 계약해지를 하는 대신

계약이행보증금을 증액하고 준공 이후 지체상금과 준공대금을 상계처리하는 조건으로 2016. 4. 25.까지 계약을 이행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코레일네트웍스(궂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당초 256,515,600원에서 513,031,200원으로 256,515,600원 증액하고 2016. 4. 25.까지 계약을 이행하도록 재차 요구하면서 계약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은 2016. 4. 25.까지도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게 되자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같은 해 5. 25.까지 용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계약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코레일네트웍스는 이를 다시 받아들여 계약이행보증금을 642,747,800원으로 129,716,600원 증액하고 지체상금을 지속 부과하는 한편 2016. 5. 25.까지 계약을 이행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의 귀책사유로 용역의 이행기한이 3차례나 연기되어 2016. 5. 25.까지 이행이 완료되더라도 당초 준공기한(2015. 12. 27.)으로부터 약 5개월이 지연된 점을 고려할 때 또다시 이행기한까지 이행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나. 용역 점수업무 부당 처리

코레일네트웍스(궂처)는 **이 계약을 유지하기로 한 2016. 5. 25.까지 용역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이행가능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계약 해제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계약이행보증금을 코레일네트웍스에 귀속시키고 계약을 해제하여야 한다.

더욱이 용역과 관련하여 법률자문(법무법인 <←, 2016. 4. 20.)한 결과 용역이 지체되거나 준공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데 대한 귀책사유가 발주처에 있지 않으므로 코레일네트웍스가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이 법률적으로 대항할 방법이 없고 코레일네트웍스가 기성부분을 인수하고 기성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상대방이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한다는 답변을 받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설사 계약의 이행가능성이 있어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관계 규정이 정한대로 지체상금을 계속 부과하면서 계약이행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고 기한을 정하여 계약을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했다.

한편 코레일네트웍스(α처)는 2016. 4. 26.부터 위 용역에 관한 시범운영을 시작한 후 2016. 5. 17. **이 준공검사를 요청하자, 감리의 종료단계 시정조치 확인과 검수지원 등의 과정을 거쳐 같은 해 5. 17.부터 5. 25.까지 준공검사를 실시하면서 247개 과업내역 중 121개 항목에서 오류가 발견되었고 1개 항목이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전체 과업내역의 49.4%에 해당하는 122개 항목이 완료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코레일네트웍스(α처)는 계약의 해제는 물론 지체상금도 추가로 부과하지 않음은 물론 미완료 사항을 하자(瑕疵)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준공 처리해주기로 하고 2016. 5. 25. 용역을 준공 처리해 주었다.

다. 용역계약 준공대금 부담 지급

**은 2016. 5. 25. 코레일네트웍스에 준공계를 제출하면서 무인화 주차시스템 1

단계 구축사업을 완료하여 준공함에 있어 시스템 안정화 기간(준공 후 1개월) 동안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서는 이행(하자 처리)을 완료한 후 준공대금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은 용역이 준공 처리된 이후 과업범위 중 미완료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상태¹⁰³⁾에서 2016. 7. 20. 코레일네트웍스(↑처)에 용역 준공대금으로 계약금액 1,710,104,000원에서 선금 511,480,000원과 납품재질 상이에 따른 감액금 3,670,000원을 제외한 1,194,954,000원을 청구하였고, 코레일네트웍스(↑처)는 2016. 8. 2. 용역이 미완료되었는데도 선금 511,480,000원과 지체상금 637,013,740원¹⁰⁴⁾ 등 1,152,163,740원을 제외한 557,940,260원을 **에 지급하였다.

라. 용역에 대한 감사업무 부담 처리

코레일네트웍스 ↓실(→팀)은 2016. 10. 17.부터 같은 해 11. 4.까지 “주요사업 추진실태 특정감사”를 하면서 “무인화 주차시스템 1단계 구축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코레일네트웍스 ↓실(→팀)은 2016. 7. 25.과 2016. 9. 6. 코레일네트웍스(α처)가 **에 시행한 하자알림 공문 등을 통해 용역이 완료되지 않은 사항을 하자로 처리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2016. 10. 28. 세무 과업내역 247개 항목을 검토하여 용역검수 시점(2016. 5. 25.)을 기준으로 122개 항목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준공 처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103) 코레일네트웍스(α처)가 2016. 7. 25. ‘무인화 주차시스템 1단계 구축사업 관련 하자 알림’ 공문으로 미완료 사항의 이행(하자처리)을 독촉하는 등 준공 후 2개월이 지나서도 미완료 사항은 계속 남아있었음

104) 지체상금률 2.5/1,000, 1일 지체상금 4,275,260원, 149일 지체

또한 코레일네트웍스 ↓실(→팀)은 2016. 11. 3. α처장 DE를 문답조사하여 DE가 미완료 사항이 있는 것을 알고도 사실과 다른 검사조서와 준공조서를 작성하고 확인자란에 서명함으로써 위 사업을 부당하게 준공 처리한 사실도 확인하였다.

그런데 코레일네트웍스 ↓실(→팀)은 2016. 11. 4. 감사를 종료하고 위 용역의 준공 처리 관련자 DE, DF, DG에 대해 신분상 조치가 필요하다고 검토하고도 ↓실장 DH이 부당 개입하여 같은 해 11. 7. 최종 감사결과보고서상에서 용역 관련자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제외¹⁰⁵⁾하는 것으로 대표이사 DI에게 보고하였고, DE 등 3명의 관련자는 아무런 신분상 조치를 받지 않게 되었다.

2. 관련자의 부당한 업무 처리

가. DF의 경우

코레일네트웍스 ↔센터 DF는 2013. 7. 10.부터 2016. 9. 20.까지 ↑본부 α처 팀장으로서 용역 감독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의 재차 계약이행보증금 증액 및 계약 유지 여부를 검토할 무렵인 2016년 4월 말부터 사업지연에 따른 처리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본부장 DJ 주재로 수차례 회의를 개최하면서 현장 검수자 DG과 DK로부터 관제시스템 등 일부 응용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되지 못하였다는 현장 테스트결과를 보고받아 준공 처리할 수 없다는 점을 파악하였다.

한편 DF는 2016년 4월 말경 사업이 계속 지연되는 문제에 대한 처리 방법을 상의하기 위하여 ↓실장 DH을 찾아가 준공 처리와 관련한 자문을 구하였고, DH은 DF에게 용역을 우선 준공처리하고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부분을 하자로 관리하면

105) 감사결과보고서에 용역이 미완료된 상태에서 준공 처리된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은 담겨 있음

서 완료하는 방법이 있다는 의견을 주었다.

그 후 DF는 “1항 가”의 내용과 같이 2016. 5. 17.부터 5. 25.까지 용역 준공검사를 하여 전체 247개 과업내역 중 121개 항목에서 오류가 발견되고 1개 항목이 검증되지 않는 등 전체 과업내역의 49.4%에 해당하는 122개 항목이 완료되지 않아 준공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런데도 ※※이 더이상의 계약이행보증금 증액이 어렵다고 하면서 준공 처리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하자 DF는 2016. 5. 23.경 개최된 회의에서 ↓본부장 DJ에게 ※※이 계약을 해제하여 사업이 무산되면 소송에 휘말리는 등 코레일네트웍스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하면서 우선 준공 처리하고 미완료 사항을 하자로 처리하여 용역을 완료하는 방안을 보고¹⁰⁶⁾하였고, 결국 회의에서 DF가 보고한 대로 위 용역에 대해 우선 준공 처리한 후 미완료 부분을 하자로 처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DF는 용역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단위테스트 결과보고서, 통합테스트 결과보고서 등 위 용역의 6개 산출물이 모두 적합한 것으로 작성하고, 용역의 11개 준공검사 항목 모두 적합한 것으로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검사자 DG와 DK의 서명을 받은 다음 감독조서와 준공조서에 서명하였다.

그리고 2016. 5. 25. 준공조서에 α처장(확인자) DE의 검토 서명을 받은 후 이를 첨부하여 ↓본부장 DJ의 최종 결재를 받아 용역을 준공 처리하였다.

또한 “1항 나”의 내용과 같이 ※※은 준공처리 당시 제출한 확약서 내용대로 용역

106) ↓본부장 DJ이 회의에서 나중에 감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α처에 ↓실과 계약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하자 DF는 ↓실장 DH으로부터 우선 완료된 부분을 준공 처리하고 미완료 부분을 하자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의 의견을 들었다고 DJ에게 보고하였음

을 이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6. 7. 20. 준공대금을 청구하였고, 같은 날 코레일네트웍스(↑처) 팀장 DL은 α처 팀장 DF에게 ※※이 준공계와 함께 제출한 확약서의 내용대로 이행(하자 처리)을 완료하였는지 확인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DF는 DL에게 ※※에 대금을 지급해도 된다고 답변하였고, 이에 코레일네트웍스(↑처)는 2016. 8. 2. 용역이행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선금 511,480,000원과 지체상금 637,013,740원 등 1,152,163,740원을 제외한 557,940,260원을 ※※에 지급하였다.

나. DE의 경우

↖처장 DE는 2014. 10. 7.부터 2016. 9. 20.까지 α처 처장으로 주차장 시설개선, 신규 주차장 개발 등 주차사업을 총괄하면서 2016. 4. 20. “1항 가”의 내용과 같이 사업지연에 따른 계약해제에 관한 외부 법률자문 결과 코레일네트웍스는 사업지연에 대한 귀책이 없어 계약해제가 가능하고 기성부분을 인수할 의무도 없다는 자문 결과를 보고받았다.

그리고 2016. 5. 25. 준공검사 결과 과업내역 247개 중 122개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검수자인 DG과 감독자인 DF로부터 보고 받았다.

그런데 DE는 DF와 사업지연에 따른 처리방법을 논의하면서 우선 준공 처리 후 미완료 사항을 하자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자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위 사업이 무산되어 코레일네트웍스에 피해가 우려된다는 사유를 들어 계약이행이 미흡한 채로 준공 처리한 후 미완료 사항을 하자로 처리하여

위 사업을 완료하는 방법을 ↓본부장 DJ에게 보고하였다.

그리고 DE는 2016. 5. 23. ↓본부장 주재로 개최된 회의에서 ↓본부장 DJ이 DE의 보고를 받아들여 준공 처리 후 미완료된 부분을 하자로 처리하여 완료하기로 결정하자 DF가 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작성한 검사조서와 감독조서를 검토하고 2016. 5. 25. 준공조서에 확인자 결재를 함으로써 위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 처리되도록 하였다.

다. DJ의 경우

↓본부장 DJ은 2014. 3. 6.부터 2017. 3. 23. 현재까지¹⁰⁷⁾ 용역 담당 본부장의 직위에서 용역 관련업무를 총괄하면서 2016. 4. 20. 용역 지연 문제와 관련된 외부 법률자문 결과 사업지연에 코레일네트웍스의 귀책이 없어 계약해제가 가능하고 계약해제 시 기성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이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런데 DJ은 2016. 5. 23. 사업지연에 대한 대책회의에서 용역 과업내역 247개 중 122개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DF와 DE로부터 ※※이 계약이행 지연으로 지체상금을 부담하고 있는데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위 사업이 무산되어 코레일네트웍스에도 피해가 우려되므로 우선 준공 처리 후 미완료 사항을 하자로 처리하여 완료하는 방법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는 DF와 DE의 보고내용대로 위 사업을 우선 준공 처리하고 미완료 사항의 경우 하자로 처리하여 완료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2016. 5. 25. DF가 계약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검사조서와 준공조서 등

107) 2016. 6. 7. \본부에서 ↓본부로 명칭 변경

을 허위로 작성하여 DE의 검토를 거쳐 결재를 올리자 그대로 결재하여 준공 처리되도록 하였다.

라. DH의 경우

한국철도공사 차량 DH은 2015. 12. 14.부터 2017. 4. 27. 현재까지 코레일네트웍스에 파견되어 ↓실장의 직위에서 감사업무를 총괄하였다.

DH은 2016년 11월 초 코레일네트웍스(α처)가 용역을 부당하게 준공 처리한 사실을 확인받기 위해 DE에 대한 문답서의 질문사항을 직접 작성하면서 용역의 과업이 완료되지 않은 사실과 DE가 이를 알고도 확인자 서명을 하여 부당하게 준공 처리한 사실을 파악하였다.

한편 DE는 2016. 11. 3. 코레일네트웍스 ↓실(→팀) DM와의 문답에서 용역이 완료되지 않은 것을 알고도 검사조서와 준공조서를 작성하고 확인자 서명을 하여 위 용역을 부당하게 준공 처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DF가 ↓실장 DH으로부터 용역 과업 중 미완료 사항을 준공 처리한 후 하자로 처리하는 내용의 의견을 받았으므로 용역의 준공 처리에 대한 책임이 있는 ↓실이 이를 문제삼는 데 대해 항의하였다.

그리고 문답조사를 입회하던 →팀장 DN가 곧바로 DH에게 DE의 진술 내용을 보고하였다.

그런데 DH은 문답조사가 진행 중인 조사실에 들어와 자신의 의견을 받아 준공 처리하였다고 진술한 DE에게 ‘자신은 단지 의견만 준 것일뿐 α처에서 결정한 일로 왜 자신을 걸고 넘어지냐’고 항의하였다.

이에 DE는 DH과 관련된 자신의 진술을 문답서에서 삭제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준공 처리 방법에 대해 DF가 ↓실장 DH와 협의하였다는 DE의 진술은 문답서에서 삭제되었다.

그리고 ↓실(→팀)은 2016. 11. 4. 감사를 종료하고 감사결과 조치계획에 위 사업의 준공 처리 관련자 DE, DF, DG에 대해 신분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실장 DH에게 보고하였다.

그런데 DH은 코레일네트웍스(α처)에서 준공 처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데도 2016. 11. 7. 갑자기 같은 해 5. 16.부터 5. 20.까지 수행한 용역 검수지원보고서¹⁰⁸⁾의 점검결과 ‘적합’으로 표시되어 있어 준공 처리를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대표이사에게 보고되는 최종 감사결과보고서상 조치계획에 용역 관련자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제외하도록 지시¹⁰⁹⁾하였다.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① 관련자 주장 및 판단 용역의 준공 처리와 관련하여 감독자 DF는 용역이행이 미흡한 상황에서 준공 처리한 데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α처장 DE와 ↓본부장 DJ도 준공 처리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당시 사업이 많이 지연된 상황에서 계약상대방

108) 2016. 5. 11.부터 2016. 5. 14.까지 실시된 공식 감리보고서(종료단계 시정조치 확인보고서)의 종합의견은 운영 중에도 결함이 발생되고 있어 오류수정에 따라 영향을 받는 프로그램에 대해 회귀테스트를 실시하여 사업종료 시까지 정상적인 품질수준을 높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위 검수지원보고서는 종료단계 시정조치확인에서 미완료 사항이라고 제시된 39개 항목을 확인하여 37개는 적합으로 2개는 점검 제외하였는데 종합의견은 오류수정에 따라 영향을 받는 프로그램에 대한 회귀테스트를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품질수준을 높이라는 의견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용역의 완료를 의미하지 않아 준공 처리 근거가 될 수 없음

109) →팀장 DN는 준공 처리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실장 DH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실장 DH의 파견기간이 종료되는 2016년 12월 이후에 부당 준공처리 관련자 DE 등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함

이 더이상 계약이행보증금 증액이 어렵다고 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코레일네트웍스에도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준공 처리하고 미완료 사항을 하자로 처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건 용역 계약상대방인 ※※은 채무불이행으로 귀책이 있어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없고, 불이행 시 코레일네트웍스는 계약을 해제하면서 계약보증금을 귀속시키고 사업 중단으로 인한 손해발생 시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점, 그리고 DF, DE, DJ도 사업지연 문제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여 그러한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점_등을 고려할때 업체의 계약 해지 시 코레일네트웍스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었다는 DF, DE, DJ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이 건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실장 DH은 ㉡ 처 팀장 DF가 ↓실에 찾아와 사업이 계속 지연되는 문제에 대한 의견을 물어 조언을 해준 것으로 우선 준공 처리하고 미완료 사항을 하자로 처리하라는 의미는 아니었고, ㉢ DE가 준공 처리 방법을 ↓실장인 자신과 협의하였다는 잘못된 진술을 하여 ‘직접 와서 물어본 것도 아닌데 여기서 진술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나무란 것에 불과하며, ㉣ 감사결과보고서에서 관련자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제외하라고 지시한 것은 검수지원보고서와 DF가 한국철도공사의 종합감사 시 제출한 경위서에서 검수지원 결과를 반영하여 준공 처리하였다고 주장한 내용을 볼 때 준공 처리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수 없어 신분상 조치를 제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 DF는 ↓실장 DH이 한국철도공사도 100%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준공 처리하고 안 된 부분은 하자 처리로 완료한 사례가 있다며 준공 처리 방법을 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DE도 DF로부터 DH과 상의한 내용을 보고받고 미완료 사항을 하자 처리로 완료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회계관계 규정에 위배되는 의견을 제시한 것은 명백하고, ㉠ DE가 문답서에서 ↓실장 관련 내용의 삭제를 요청한 것은 ↓실장 DH이 관련 내용을 넣든지 빼든지 알아서 하라고 하며 기분 나빠하는 상황에서 ↓실장 DH에게 잘못 보이면 감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압박감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 용역 검수지원보고서 중 합의견에서 오류 수정에 영향을 받은 프로그램에 대해 지속적으로 회귀테스트를 실시하여 품질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도록 하는 등 검수지원보고서에 용역의 완료를 의미하는 내용은 없어 준공 처리가 정당하다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 ↓실장이 작성한 DE에 대한 문답서 질문사항에 부당 준공 처리를 확인받는 내용이 있고 DE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최종 감사결과보고서에도 용역 미완료 상태에서 부당하게 준공 처리하였다는 내용은 그대로 둔 채 관련자에 대한 신분상 조치만 제외되어 ↓실장 DH이 감리결과를 근거로 준공 처리에 문제가 없어 관련자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제외하였다는 주장은 DE에 대한 문답 이후 관련자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제외하기 위한 변명으로 보여 받아들일 수 없다.

② 관계기관 의견 코레일네트웍스는 용역이 완료되지 못한 상황에서 준공 처리하고 대금을 지급한 데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문책요구 양정 용역계약을 부당하게 준공 처리한 DF와 DE의 행위는 코레일네트웍스 「취업규칙」 제8조에 위배된 것으로 코레일네트웍스 「징계규정」 제4조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감사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DH의 행위는 한국철도공사 「인사규정」 제32조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규정 제52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코레일네트웍스주식회사 사장은

- ① 무인화 주차시스템 1단계 구축사업 준공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DF와 DE를 「징계규정」 제7조에 따라 징계처분(경징계 이상)하고(**문책**)
- ② 준공 처리 당시 제출한 확약서의 내용과 다르게 무인화 주차시스템 1단계 구축사업을 부실하게 이행한 ※※ 주식회사에 대해 지체상금을 부과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며(**통보**)
- ③ 앞으로 용역 감독 및 검수업무 등 계약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한편, 관련자 ↓본부 본부장 DJ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코레일네트웍스주식회사에 파견 근무 중 감사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DH을 「인사규정」 제52조에 따라 징계처분(경징계 이상)하시기 바랍니다. (**문책**)

감 사 원

문 책 요 구

제 목 배수개선사업 소요자재 검수업무 부당 처리

소 관 기 관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조 치 기 관 한국농어촌공사

내 용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당진지사 ㄱ부 부장 DO은 2016. 1. 18.부터 2016. 12. 31.까지,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논산금산지사(이하 “논산지사”라 한다) ∴ 지소 소장 DP은 2016. 10. 14.부터 2016. 12. 31.까지 각각 논산지사 ㄱ부 차장 및 부장¹¹⁰⁾의 직위에서 배수개선사업을 감독하고 자재 검사 업무를 담당하거나 배수개선사업을 총괄하였다.

한편 논산지사는 2016. 12. 14. 충청남도 논산시 일원의 ㄱㄱ지구¹¹¹⁾와 ㄱㄴ지구¹¹²⁾ 배수개선사업에 각각 소요되는 철근콘크리트용배수로관(계약금액 680, 232,960원, 수량 1,473개, 납품기한 2017. 1. 13., 이하 “수로관”이라 한다)과 철근콘크리트용봉강(계약금액 114,945,110원, 수량 190여 톤, 납품기한 2017. 2. 6., 이하 “철근”이라 한다)¹¹³⁾을 ㄴㄴ주식회사(대표이사 DQ, 이하 “ㄴㄴ”이라 한다)¹¹⁴⁾와 ㄷㄷ주식회

110) DP은 2015. 1. 1.부터 2016. 12. 31.까지 논산지사 ㄹ 장으로 근무하면서 2016. 10. 14.부터 2016. 12. 31.까 ㄱ부장직을 겸함

111) 충남 논산시 부적면 일원 지역의 침수방지 등을 위하여 배수장을 설치하고 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총사업비: 국고 보조금 207억여 원, 사업기간: 2016. 12. 1.~2021. 2. 3.)

112) 충남 논산시 채운면 일원 지역의 침수방지 등을 위하여 배수장을 설치하고 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총사업비: 국고 보조금 213억여 원, 사업기간: 2015. 9. 22.~2019. 12. 30.)

113) 조달청과 ㄷㄷ 등 11개 제강회사의 계약조건 협의사항인 「(철근) 물품 구매계약 추가 특수조건」 제2조에 따르면 납품

사(대표이사 DR, 이하 “J J”이라 한다)¹¹⁵⁾로부터 각각 조달·구매하였다.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시행세칙」 제127조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체결하는 계약에 준용되는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2016. 5. 3. 조달청공고 제2016-52호) 제6조의3에 따르면 물품에 대한 납품은 납품수량, 납품기한, 납품장소 등을 명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발급하는 납품요구서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한국농어촌공사 「공사감독업무지침」 제10조 및 [별표 1]과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시행세칙」 제110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원은 공사 재료가 현장에 반입될 때마다 수량을 확인한 후 “지급자재검사 및 수불부”(이하 “수불부”라 한다)에 반입일과 수량 등을 기록하고 검사에 합격된 물품에 대해서는 검사조서 또는 물품 납품서에 기명날인하여 계약담당부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1. DO의 경우

DO는 2015. 12. 1. ΓΓ지구 배수개선사업에 소요되는 수로관과 같은해 12. 13. ΓΔ지구 배수개선사업에 소요되는 철근의 구매요청 문서를 각각 기안하였다.

가. 수로관 검수업무 관련

그런데 DO는 UU이 공사현장에 납품하는 수로관 검수업무를 수로관 매립 등의 시공회사인 ΣΣ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에게 맡겨 두고서는 2016. 12. 15.부터

업체의 하치장 납품기한은 수요기관으로부터 소요량통보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45일로 되어 있고, J J은 논산지사로부터 2016. 12. 23. 소요량통보서를 접수받아 철근의 납품기한은 2017. 2. 6.임

114)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는 2016. 12. 14. 논산지사의 2000×1500 규격 수로관 302개, 3000×2000 규격 수로관 317개, L형 수로관 854개 계 1,473개의 구매 요청에 따라 대전지방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UU를 납품업체로 선정하고 대전지방조달청에 수로관 1,473개를 계약금액 680,232,960원에 조달요청하였고, 대전지방조달청은 같은 날 논산지사와 UU에 “분할납품요구 및 통지” 문서를 각각 시행함

115) 논산지사는 2016. 12. 13. 논산지사 Γ부에 2016년 ΓΔ지구 배수개선사업에 필요한 소요자재 철근 계 190.674톤을 구매의뢰하였고, Γ부는 같은 해 12. 14.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예산 114,945,110원에 위 철근 조달을 요청하여 대전지방조달청은 같은 날 J J를 납품업체로 선정하여 “분할납품요구 및 통지” 문서를 시행함

2016. 12. 21. 사이에 6차례에 걸쳐 2000×1500 규격 수로관 302개가 납품된 사실을 수불부에 기록하지 않는 등 납품 현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¹¹⁶⁾

그리고 2016. 12. 26. UU 영업담당 직원 DS과 생산·납품계획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DS로부터 “당시까지 납품되지 않은 3000×2000 규격 수로관 317개와 L형 수로관 854개 계 1,171개 수로관을 계약상 납품기한인 2017. 1. 13.까지 납품할 수 없고 2017년 1월 말에야 납품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따라서 DO은 UU과 함께 납품기한 내에 신속히 납품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거나 납품기한 내 납품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 방안을 검토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DO은 별다른 검토 없이 DS에게 “2017년 1월 말까지는 납품을 완료해라”고 하면서¹¹⁷⁾ 2016. 12. 28.에는 오히려 DS에게 “오늘 검수하게 검수서류와 보관증을 작성해 와. 검수요청해”라고 지시하였다.¹¹⁸⁾

이에 따라 UU이 2016. 12. 28.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문서로 실제 납품하지 않은 수로관 계 1,171개를 포함한 계약물량 1,473개 전부를 납품한 것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검사검수요청서를 보내오자 DO은 같은 날 검사검수요청서에 서명한 후 논산지사 〇부장 DP의 결재를 받았다.

116) 2017년 2월경에야 ΣΣ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이 2016년 12월부터 소급하여 수불부에 수로관 납품일과 납품수량을 임의로 작성하였으며, DO은 현장소장이 수불부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함

117) UU의 DS은 DO이 “1월 말까지 납품해라”라고 한 것을 “구두로 정한 납품기한으로 이해했다”고 진술함

118) DO은 논산지사 ㅊ부 계약담당자 DT이 2016년 12월경 ‘연말까지 예산을 집행하려면 늦어도 2016. 12. 28.이나 같은 해 12. 29.까지는 검수를 완료해서 서류를 넘겨달라’고 요구하여 검수처리했다고 진술하나, DT은 “매년 말 통상적으로 정상적인 납품 건에 대하여 예산집행이 될 수 있게 관련서류를 신속히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DP 또한 DT과 같은 취지로 진술함

그리고 나서 DO은 2016. 12. 28. 논산지사 1부 계약담당자 DT에게 위 검사검
수요청서¹¹⁹⁾를 전해주어 검수가 완료된 것으로 통보함으로써 수로관 대가 전액인
680,232,960원¹²⁰⁾을 지급되게 하였다.¹²¹⁾

이에 따라 논산지사는 UU로부터 납품기한 2017. 1. 13.까지 2000×1500 규
격 수로관 302개만 납품받았고, 2017. 3. 13. 감사일 현재까지도 3000×2000 규격
수로관 262개, L형 수로관 658개 계 920개 수로관을 생산하여 그 중 693개만 납품
된 것으로 확인¹²²⁾ 되었으며, UU이 수로관을 납품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지체상
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되었다.¹²³⁾

나. 철근 검수업무 관련

또한 DO은 2016. 12. 23. 철근 전량에 대한 철근출고요청서를 JJ에 전달한
후 ㄱ지구 배수개선사업 시공회사인 ㄱ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부터 “철근 생
산일이 정해져 있고 철근 수요가 많아 올해 안에는 납품이 어렵다”고 보고받고 철근
이 하나도 납품되지 않았는데도 같은 해 12. 27. JJ에 검사검수요청서를 보내달
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JJ이 2016. 12. 27. 실제 납품하지 않은 철근 190.674톤 전부를 납

119) 검수업무 담당자가 검사검수요청서에 서명을 하면 실질적으로 검수가 완료되었다는 의미의 검수조서로써 기능을 함

120) UU은 2016. 12. 28. 논산지사 1부 계약담당자 DT이 나라장터를 통해 검사검수요청서를 승인하자 같은 해 12. 28.
대전지방조달청에 대금지급을 청구하였고, 대전지방조달청은 2016. 12. 29. UU에 계약대금 전액인 680,232,960원
을 지급한 후 논산지사에 조달수수료를 포함한 대가 납입을 고지하여 같은 해 12. 30. 논산지사로부터 조달수수료
3,489,590원을 포함한 683,722,550원을 수령함

121) UU은 납품기한 2017. 1. 13.까지 3000×2000 규격 수로관과 L형 수로관을 일부 생산하였으나(각각 73개, 361개)
시공회사 인수 지연 등을 사유로 현장에 납품하지 않고 UU 공장에서 보관하였음

122) 나머지 227개 수로관은 시공회사 인수 지연 등의 사유로 UU 공장에서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됨

123) UU이 논산지사 및 수로관 매립 시공회사에 납품기한까지 생산해 놓은 수로관(3000×2000 규격 수로관 73개, L형
수로관 361개)을 인수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시공회사가 야적공간 부족 등의 사유로 인수를 거부한 사실이 있고,
수요기관에서 인수를 거부하여 추가 생산을 중단하였다는 UU 직원 DU의 진술 등을 감안할 때 UU의 단독 책임으
로 납품이 지연되었다고 볼 수 없음

품했다는 내용의 검사검수요청서를 보내오자 DO은 같은 날 서명한 후 DP의 결재를 받아 DT에게 검사검수요청서를 전해주어 검수가 완료¹²⁴⁾된 것으로 통보함으로써 철근 대가 전액인 114,945,110원¹²⁵⁾을 J J에 지급되게 하였다.

2. DP의 경우

DP은 논산지사 등 사업부서에서 근무한 경험이 많고 2007년경에는 배수개선사업 공사감독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어 검사·검수와 관련된 규정 및 절차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DP은 2016. 12. 27. DO이 서명한 철근 검사검수요청서를 보여주며 “현재 물량은 들어오지 않았는데 철근회사와 이야기해보니 검수해도 철근이 1월이면 모두 들어올 것 같다”고 보고하고, 다음 날인 같은 해 12. 28.에도 수로관 검사검수요청서를 보여주며 “아직 납품을 전혀 받지 않았는데 계속 반입하고 있고 계속 사업이라 자재는 계속 필요하니 미리 검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보고하자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고 검사검수요청서에 그대로 최종 결재하여 “1항”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관계기관 등 의견

① **관련자 의견** DO과 DP은 검수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잘못을 인정하면서 선처를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124) 철근은 납품기한 내인 2017. 1. 5.부터 같은 해 2. 3. 사이에 5차례에 걸쳐 계 190. 674톤 전량 납품된 것으로 확인됨

125) J J은 2016. 12. 27. 논산지사 +부 계약담당자 DT이 나라장터를 통해 검사검수요청서를 승인하자 같은 해 12. 28. 대전지방조달청에 대금지급을 청구하였고, 대전지방조달청은 2016. 12. 28. J J에 계약대금 114,945,110원 전액을 지급한 후 논산지사에 조달수수료를 포함한 대가 납입을 고지하여 같은 해 12. 29. 논산지사로 부터 조달수수료 620,700원을 포함한 115,565,810원을 수령함

② **관계기관 의견** 논산지사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공사감독원 등 관련 직원 교육을 실시하여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지급자재의 검수업무를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문책요구 양정 납품되지 않은 물품을 검수처리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하게 한 DO, DP의 행위는 한국농어촌공사 「취업규칙」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인사규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배수개선사업 소요자재의 검수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DO과 DP을 한국농어촌공사 「인사규정」 제49조에 따라 징계처분(경징계 이상) 하시기 바랍니다.(문책)

감 사 원

징계·주의요구

제 목 용역계약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업무 등 부당 처리

소 관 기 관 서울특별시

조 치 기 관 서울특별시

내 용

1. 사건 개요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는 관내 노면하부에 존재하는 동공(洞空)¹²⁶⁾을 찾아내기 위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방식으로 2015. 7. 24.과 2015. 11. 11. [표 1]과 같이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와 “2015년도 노면하부 동공탐사 용역계약”(이하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표 1] 노면하부 동공탐사 용역계약 체결 현황(2015년)

(단위: 천 원)

구분	계약상대자	계약체결일	계약금액	계약기간(당초)	준공승인일
1단계	☎☎	2015. 7. 24.	392,185	2015. 7. 24. ~ 2015. 12. 30.	2016. 6. 7.
2단계	☎☎	2015. 11. 11.	416,000	2015. 11. 17. ~ 2016. 5. 31.	2016. 7. 7.

자료: 서울시 제출자료 재구성

그런데 감사원 감사결과, 서울시가 2015년도 1단계 용역계약의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면서 제안요청서(입찰공고)에 명시한 세부 심사기준과 다르게 일부 평가항목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잘못 선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26)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는 공간

그리고 2015년도 1단계 및 2단계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자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맺음으로써 계약 상대방에게 부과해야 할 지체상금을 면제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제안서평가위원회 부당 운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8항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제안서 평가를 위한 계약이행능력 심사는 해당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발주부서)이 정한 세부 심사기준과 절차에 따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서울시는 2015. 6. 9. 공고한 ‘2015년도 1단계 용역계약 제안요청서’를 통해 제안서 제출업체의 기술능력(정성평가 60점, 정량평가 20점)과 입찰가격(20점)을 평가하여 그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 순으로 협상 순위를 선정하되, 기술능력 부문의 정성평가는 발주기관이 구성한 제안서평가위원회¹²⁷⁾(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제안요청서의 [별표 8]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표 2]와 같이 하도록 되어 있다.

127)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1항과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제출받은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안서평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

[표 2] 정성적 지표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 등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기준
기술지식	제안서 평가를 위한 동공탐사 테스트 결과	- 탐지실적 1개소는 5점, 2개소는 10점 부여 ※ ① 동공탐사 실적이 0개소인 경우 '기술지식 평가 부문' 전체를 0점 처리함 ② 동공탐지 불인정 기준은 '발주기관이 확인한 동공의 위치와 탐사자료를 비교하여 완전히 벗어난 경우'임	10점
	탐사자료 분석계획	- 분석방법의 용이성·타당성	8점
	동공관리방안 수립계획	- 계획수립의 타당성·실행 가능성	7점
사업관리	사업수행계획 등 5개 항목	- 수행조직, 인력, 담당업무의 적정성 등	25점
추가제안	기술개발 및 기술지원	- 탐사기술의 수준향상대책 적절성 등	10점

자료: 서울시 제출자료 재구성

한편, 서울시는 2015. 7. 7. 개최된 위원회의 위원들로부터 ‘기술지식 평가부문의 동공탐사 테스트 결과 항목 평가 시 참여업체가 제시한 동공 위치와 발주기관이 제시한 동공 위치를 비교하여 일부가 겹치거나 외곽선이 접하는 등 여러가지 상황에 대해 어느 경우까지 동공을 찾은 것으로 보고 점수(5점)를 부여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어려우니, 발주기관이 제시한 동공 위치와 각 참여업체가 제시한 동공 위치의 정확성 정도를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그 순위대로 점수를 부여¹²⁸⁾하는 것으로 심사기준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받았다.

그러나 위원회가 정성평가 항목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제안요청서(입찰공고)에 제시된 항목별 세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므로 참여업체가 제시한 동공의 위치가 발주기관이 제시한 동공의 위치와 일치하는지(5점) 또는 벗어났는지(0점)를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위원회가 정하도록 할 수는 있으나, 입찰 공고된 심사기준과 다르게 위원회가 임의로 심사기준을 변경하여 평가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128) 기술지식 평가부문의 3가지 평가항목 모두 업체별 순위를 부여한 후 각각 수, 우, 미, 양으로 평가하여 각각 배점의 100%, 80%, 60%, 40%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더구나 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은 공고된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심사기준과 다른 방식으로 평가하는 것일 뿐 아니라, 동공의 위치를 찾지 못하더라도 상대평가 방식에 따라 점수를 획득할 수 있거나 동공의 위치를 명확히 찾아내고도 심사기준대로 만점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런데 서울시는 ‘위원회가 협의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면 공고된 심사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면서 위원회가 기준을 변경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참여업체별로 제시한 동공 위치를 상대적으로 비교 평가한다는 사유로 서울시가 제시한 동공 위치와 비교하여 완전히 벗어난 위치를 제시하여 ‘동공탐사 테스트 결과’ 항목 점수가 0점으로 처리될 ㉔에 대해서도 8점을 부여¹²⁹⁾ 하였고, 서울시는 위원회가 평가했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그대로 인정하였다.

그 결과 서울시는 제안요청서상의 심사기준대로 평가하였더라면 1위(79.23점)로 평가되었어야 할 주식회사㉔ 대신 동공탐사 테스트 결과 동공을 한 곳도 찾지 못해 3위(70.24점¹³⁰⁾)로 평가되었어야 할 ㉔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¹³¹⁾한 후 2015. 7. 24. 2015년도 1단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계약기간 부당 연장

서울시가 ㉔과 체결한 ‘2015년도 1단계 용역계약’ 과업내용서에 따르면 ㉔은 2015. 7. 24.부터 2015. 12. 30.까지(160일간) 관내 도로 250km 구간을 탐사하여 최

129) 위원회는 발주기관이 제시한 동공 위치와 비교하여 주식회사FF이 ㉔보다 더 정확한 위치를 제시하였는데도 ‘동공탐사 테스트 결과’에 대해 만장일치로 주식회사FF에 6점을 부여하고, ㉔에 8점을 부여하는 등 공고된 심사기준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상대평가하였던 것으로 보임

130) 동공을 한 곳도 찾지 못할 경우 기술지식 평가부문(25점 배점)의 3개 평가항목 전체를 0점 처리하도록 되어 있음

131) ㉔에 기술지식 평가부문 점수 23점을 부여하여 평가점수 합계는 93.24점

소 75개의 동공을 찾기로¹³²⁾ 되어 있다.

그러나 ㉮은 동공을 탐사하고 분석하는 기술 등이 부족하여 2015. 12. 14.까지 7개의 동공¹³³⁾ 밖에 찾지 못하는 등 계약기간 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자, 2015. 12. 16. 서울시에 ‘추가 비용을 들여서라도 우수 기술을 보유한 일본의 ㉮주식회사와 협력하여 용역을 완성할 계획¹³⁴⁾이므로 계약기간을 2016. 5. 31.까지 (153일간) 연장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등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불가항력 등의 사유¹³⁵⁾ 없이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기한 안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상금¹³⁶⁾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의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여 용역 과업의 변경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맺고, ㉮에 지체상금(97,282천 원)¹³⁷⁾을 부과하지 않았다.

또한, 서울시는 서울시와 ‘2015년 2단계 용역계약’을 맺은 ㉮가 2015. 11. 17.

132) 위 관서는 2014년 12월 관내 61km 구간에 대한 시범탐사를 통해 37개(0.6개/km)의 동공을 찾았던 점을 고려하여 용역 완성에 대한 최저 기준을 시범탐사 결과의 50% 수준(0.3개/km)으로 설정함

133) 7개의 동공 중 3개는 주식회사㉮가 찾아 알려준 것으로 ㉮이 직접 찾은 동공은 4개에 불과함. 한편, 주식회사㉮는 2016년도 1단계 용역계약의 계약상대자로 선정되어 550km 구간에서 180개의 동공을 찾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358개(0.65개/km)의 동공을 찾음

134) ㉮의 용역수행 실적이 저조하자 서울시는 2015년 11월 부진한 공정률에 대한 만회대책을 요구하면서 일본의 ㉮주식회사를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은 이를 수용하여 ㉮주식회사와 2015년 12월 기술협력을 체결함(㉮주식회사는 2016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재탐사를 실시하여 동공 117개를 찾았고, ㉮으로부터 187백만 원을 지급받음)

135) 태풍, 홍수 등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 발생,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 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 수행이 중단된 경우,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경우 등임

136) 서울시가 ㉮ 및 ㉮와 용역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은 각각 1000분의 2.5임

137) 97,282천 원 = [{392,185천 원(계약금액) - 105,300천 원(1차 기성금)} × 132일(연장기간) × 0.25%] + [{392,185천 원(계약금액) - 105,300천 원(1차 기성금) - 249,600천 원(2차 기성금)} × {21일(연장기간) + 7일(준공검사기간)} × 0.25%]

부터 2016. 5. 31.까지(197일간) 관내 도로 265km 구간을 탐사하여 최소 84개의 동공을 찾기로 하였으나, 2016. 2. 23.까지 8개의 동공을 찾는 등 기한 안에 용역을 완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여 서울시에 2016. 6. 30.까지(30일간)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¹³⁸⁾한 데 대하여도 이를 그대로 승인해 주면서 ₩에 지체상금(22,678천 원)¹³⁹⁾을 부과하지 않았다.

2. 관련자의 부당한 업무 처리

서울시 m본부 H과 DV은 2014. 8. 1.부터 2017년 4월 현재까지, 같은 과 H팀장 DW는 2014. 1. 8.부터 2017년 4월 현재까지 각각 위 관서 위 직에서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추진계획 수립, 계약상대자 선정 및 계약기간 연장 등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주관하였다.

가. DV의 경우

DV은 “1항 가”와 같이 2015년 6월경 2015년도 1단계 용역계약의 계약상대자 선정을 위해 제안요청서에 반영할 업체선정 평가의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하면서 [표 2]와 같이 ‘동공탐사 테스트 결과’ 심사기준을 직접 작성하고, 서울시 품질시험소(도로포장연구센터)¹⁴⁰⁾의 검토를 받아 ‘제안서 평가용 동공조사서’ 서식을 직접 작성하여 ‘동공탐사 테스트 결과’의 평가방법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며, 동공탐사 테스트 결과 ‘동공탐사 실적이 0개소인 경우 기술지식 평가부문 전체(25점)를 0점 처리’

138) ₩는 일본 ₩주식회사와 협력하여 용역을 완성하겠다는 공정만회대책(2016. 3. 17.)을 마련하여 제출함

139) 22,678천 원 = {416,000천 원(계약금액) × 14일(연장기간) × 0.25%} + [{416,000천 원(계약금액) - 268,400천 원(기성금)} × {16일(연장기간) + 6일(준공검사기간)} × 0.25%]

140) ‘송파구 도로함몰 사고’ 등을 계기로 2014년 9월 마련한 ‘도로함몰 특별관리 대책’에 따라 동공탐사 장비 도입과 전문 인력 등을 확충함

하는 것으로 기준을 정하였다.

더욱이 DV는 2015. 7. 4. 각 참여업체들로부터 동공탐사 테스트 결과 평가에 사용될 제안서 평가용 동공조사서를 제출받은 후 품질시험소의 담당자 DX에게 ‘위원회로부터 동공조사서의 기술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이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동공조사서를 검토한 후 위원회에 배석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런데 2015. 7. 7. 위원회 위원들이 “1항 가”와 같은 내용으로 질의하자, DV는 품질시험소의 담당자로 하여금 기술적인 사항과 관련된 의문점을 답변¹⁴¹⁾하도록 하거나 자신이 직접 마련한 심사기준을 명확히 설명하는 대신 팀장 DW와 상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배점 등도 조정할 수 있다고 임의로 판단한 후 ‘위원회가 협의하면 공고된 심사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고 답변함으로써 위원회가 입찰공고된 세부 심사기준과 달리 임의로 ‘동공탐사 테스트 결과’ 항목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DV는 “1항 나”와 같이 2015. 12. 16. ㉮이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자, 연장을 요청한 사유 등이 명시된 ‘부진공정 특별 만회대책 제안’ 문서를 직접 검토하였으므로 계약상대자인 ㉮의 귀책사유로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용역을 완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약기간을 연장(지체상금 미부과)하여야 발주기관이 목적인 바를 달성할 수 있다는 내용의 ‘부진공정 만회 특별대책 제안서 검토보고’ 문서를 작성한 후 팀장 DW, 과장 DY(퇴직)의 검토를 거쳐 2015. 12. 24. ㉮관 DZ에게 보고하여 결재를 받았다.

141) 품질시험소 담당자 DX는 위원회에 배석하기 전 입찰 참여업체가 제출한 동공조사서를 검토하여 주식회사㉮㉮와 주식회사FF은 답안과 비교하여 일부 겹치는 등 비슷하게 찾았고, Pts주식회사와 ㉮㉮은 많이 떨어진 지점을 제시한 것을 확인한 후 위원회에 참석하였으나, 이 같은 내용을 위원들에게 답변할 기회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담당 부서의 직원도 아니므로 적극적으로 그 의견을 제시하기가 어려웠다고 진술함

그리고 나서 DV는 2015. 12. 24. 서울시 Rs과에 계약기간 종료일만 당초 2015. 12. 30.에서 2016. 5. 31.로 153일간 연장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청함으로써 변경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였다.

또한, DV는 2015년 2단계 용역계약과 관련하여서도 “1항 나”의 내용과 같이 지체상금 부과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해 주는 것으로 검토보고 문서를 작성하였으며, 2016. 3. 28. m관 EC의 결재를 받은 후 다음날 서울시 Rs과에 변경계약을 요청함으로써 변경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였다.

나. DW의 경우

DW는 H팀장으로서 담당자 DV이 작성한 2015년도 1단계 용역계약의 추진계획, 제안요청서 등을 직접 검토하고, 과장 DY 등에게 보고하는 등의 과정에서 동공탐사 테스트 결과의 세부 심사기준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DW는 “1항 가”의 내용과 같이 2015. 7. 7. 위원회에 참석하여 위원회의 위원들로부터 질의를 받아 담당자 DV과 마찬가지로 공고된 심사기준대로 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았다.

오히려 DW는 공고된 심사기준 등을 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위원회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다고 임의로 판단한 후 입찰공고된 심사기준도 위원회가 변경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DW는 “1항 나”의 내용과 같이 DV이 2015년도 1·2단계 계약상대자의 계약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작성·보고한 ‘부진공정 만회 특별대책 제안서 검토보고’

(2015. 12. 24. 및 2016. 3. 28.)를 검토하면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용역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문서에 각각 그대로 검토·서명함으로써 지체상금 부과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것으로 변경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였다.

다. EA 및 EB의 경우

서울시 Rs국 Rs과 EA은 2015. 12. 24. DV이 2015년도 1단계 용역계약의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하자, 계약기간 종료일만 2015. 12. 30.에서 2016. 5. 31.로 변경되었고 계약기간 연장의 사유로 든 ‘공정계획의 변경’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같은 날 DV의 요청대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서울시 Rs국 Rs과 EB는 2016. 3. 29. DV이 2015년도 2단계 용역계약의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하자, EA과 마찬가지로 계약기간 연장 관련 서류만 확인하면 연장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는데도 검토를 소홀히 한 채 그 다음날 DV의 요청대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① ‘제안서평가위원회 부당 운영’ 관련 서울시 및 DV, DW는 위원회로 하여금 공고된 심사기준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적법하게 심사기준을 변경하도록 하고,

㉔ 위원회의 위원들이 참여업체가 제출한 동공조사서의 횡방향 거리 표기가 부정확하고, 동공의 중심 위치가 일치하지 않는 등 공고된 심사기준으로는 평가할 수 없다면서 심사기준을 변경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하여 불가피하게 허용한 것이며, ㉔ 제안요청서에 ‘발주기관의 계획 변경으로 제안요청서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따르도록 명시’ 하였으므로 위원회가 심사기준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다는 점을 들면서 정당한 업무 처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㉔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에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 위원회가 공고된 심사기준과 다르게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같은 규정 제6조 제1항에 ‘평가는 해당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㉔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들은 DV와 DW가 위원들이 협의하여 결정하면 가능하다고 하여 “1항 가”와 같이 진행한 것이고, 만일 공고된 심사기준을 명확히 안내받았더라면 발주기관의 답안 동공조사서와 참여업체가 제출한 평가용 동공조사서의 각종 정보를 비교하여 완전히 벗어난 경우를 판단하는 것이 어렵지 않으므로 굳이 심사기준을 변경하여 평가를 진행할 이유가 없었다고 답변¹⁴²⁾한 점, ㉔ 제안요청서에 ‘제안요청서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따르도록 명시’하였더라도 이는 심사기준을 변경하여 제안요청서를 다시 공고할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있으나 공고된 심사기준을 위원회가 임의로 변경할 수 있

142) 위원 중 1명은 ‘심사기준을 변경할 경우 향후 감사 등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질의까지 하였으나, DV와 DW는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답변하였다고 진술함

도록 허용하는 근거로 볼 수는 없는 점, ㉔ 심사기준이 불합리하여 위원회가 심사기준을 변경하도록 한 것이라면 2015년 2단계 용역계약부터는 동공탐사 테스트 결과의 심사기준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서울시는 2015년 1단계 용역계약과 유사한 심사기준을 마련·공고하였고, 2015년도 2단계 용역계약의 위원회는 심사기준에 대한 별다른 논의 없이 공고된 심사기준대로 평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서울시 및 DV, DW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계약기간 부당 연장’ 관련 서울시 및 DV, DW는 ㉕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였더라도 용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6절 ‘1. 과업내용의 변경(용역공정계획의 변경)’에 근거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㉕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7절 ‘2. 계약기간의 연장’에 계약기간의 연장은 ‘불가항력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에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1항 나”와 같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는 계약기간의 연장 사유가 될 수 없는 점, ㉖ ‘2015년도 1·2단계 용역계약’ 변경계약서에 따르면 계약상대자가 추가업무를 수행하거나 용역의 항목이 감소하는 등 과업내용의 변경은 없고, 계약상대자가 용역을 완료하기 위해 계약기간의 연장만을 요청한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서울시와 DV, DW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¹⁴³⁾

143)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소관 부서인 구 행정자치부(회계제도과)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라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 것이나, 과업내용의 변경 없이 계약상대자의 과업수행 지연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회신함(2017. 5. 4. 회계제도과-1202)

징계요구 양정 위원회 운영 및 계약기간 연장 등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DV과 DW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서울특별시장은

- ①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 및 계약기간 연장 등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DV 및 DW를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징계처분(경징계 이상) 하고(**징계**)
- ② 앞으로 제안서평가위원회로 하여금 공고된 심사기준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거나 계약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일이 없도록 하며
- ③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다른 기관으로 옮긴 관련자에 대하여는 현 소속 기관장에게 주의를 촉구하도록 통보)하시기 바랍니다.(주의)